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플레이스

교정본부장 신년사

교정 이모저모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촬영 풍경

역사와 오늘

천년의 고도를 빼닮은 고풍스러운 품격 경주교도소

교정의 공간

평균을 넘어 진일보한 미래로 경주교도소 복지와

교정 아카이브

교정 포커스 금융명

근대식 건축의 공주감옥

교정 논문 김영대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교정 리포트 차명호

21세기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중심의 교정모형 탐색

전문가 칼럼 윤영석

교도소를 위한 변론

교정 판례 김소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살펴보는 접견제도

교정 백과 윤영석

외국의 교정사례 연구

교정 NEWS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01

2023 January + Vol.560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01

2023 January + Vol. 560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3년 1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기획·디자인
반디컴 Tel. 02-2272-1190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교정본부장 신년사	04
교정 이모저모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촬영 풍경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라! 교정교화 현장 생생한 돋보기	06
역사와 오늘 천년의 고도를 빼닮은 고풍스러운 품격 경주교도소	10
교정의 공간 평균을 넘어 진일보한 미래로 경주교도소 복지과	16
외부 칼럼 운동의 세계로 들어선 뜻밖의 손님, 채식	20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교정 포커스 근대식 건축의 공주감옥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22	교정 NEWS	132
교정 논문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김영대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40	모범 공무원	141
교정 리포트 21세기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중심의 교정모형 탐색 차명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68	독자마당	142
전문가 칼럼 교도소를 위한 변론 윤영석 법학박사	86		
교정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살펴보는 접견제도 김소라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감	88		
교정 백과 외국의 교정사례 연구 윤영석 법학박사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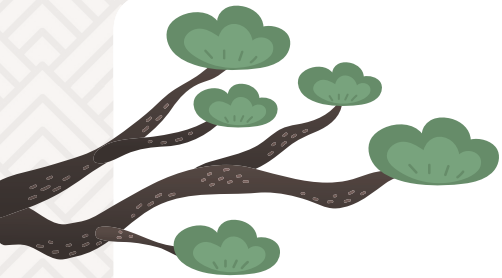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정본부TV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영특한 토끼처럼 멀리 도약해 뜻한 목표를 달성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멋진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교정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 조직 내 갈등 해소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제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조금씩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교정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9월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의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의지에 공감하며 조직 발전과 직원 처우 개선, 자부심 제고

와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개월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과 차관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직원 상황대기실 및 현장 근무자실 개선', '야간근무자 급식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격무 근무자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확대' 등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80억89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고충전보기간 단축' 등 교정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새해에도 저는 초심을 다시 새기며 동료 여러분이 제복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 직급 격상', '정상(완전) 4부제 확대 시행', '계호업무수당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세를 갖춘 유능한 직원이 입직 경로와 관계없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승진제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군인·경찰·소방과 같은 제복공무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내부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회적 인식변화를 유도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때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본부 직원 모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1만7000여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지난해 '직원 피복 개선', '보안근무 환경개선', '내부 호칭 조정' 등 정책을 추진할 때 법무샘 토론마당 등에 게시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교정본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통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직원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언제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 및 타 부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후에 최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너그럽이 헤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교정본부'를 만들기 위한 작은 충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변화를 만드는 값진 여정에 저를 믿고 동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다 지혜롭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3년간의 긴 터널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운과 지혜의 미소를 띤 토끼의 해, 마스크를 벗고 대면할 수 있는 한 해를 기대하며, 함께 극복했던 지난 어려운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교정본부장 *신 응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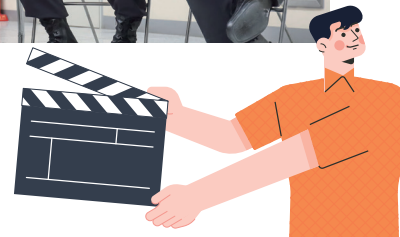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촬영 풍경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라! 교정교화 현장 생생한 돋보기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최근 첫 방송된 SBS 공익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통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교정교화 현장이 공개됐다.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을 둘러싼 진솔하고도 생생한 이야기가 오고 간 촬영 현장을 찾아가 보자.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정공무원의 열정과 헌신을 담다

철저한 보안을 지키며 외부와 차단된 채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성을 목표로 뒤에서 묵묵히 고군분투하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공익 수행 기관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능 프로그램이다. 가수 김종국과 개그맨 양세형, 배우 이이경이 진행자로 나서는 가운데 교양 요소와 예능 요소를 적절히 엮으며 공익 수행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1월 5일 첫 방송된 1회에서는 교정시설과 교도관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과 다채로운 사연을 조명해 주목 받았다. 이날 방영분은 지난해 연말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수용 질서 확립에 힘을 쏟는 교정공무원을 만나고 교정시설 내 다양한 부서를 소개했다. 교도관들의 숨은 노력과 열정을 소개한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몰랐던 감동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촬영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먼저 진행됐다. 방송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만 봤던 교정시설을 처음 접한 출연자들은 수용자가 돼 입소 체험을 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

을 이어가며 교정시설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하나하나 거둘 수 있었다. 이어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자리를 옮겨 녹화를 계속했다. 심리치료센터, 의료과, 수용동, 중앙통제실 등 다양한 부서와 시설을 방문해 교정공무원의 개인적 사연과 업무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출연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정교화라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에 임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때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재치와 유머를 더하며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다. 특히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대화에서는 사뭇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은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촬영이 끝날 즈음에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 재사회화라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묵묵히 나아가는 교정공무원들의 이야기는 2회 분량으로 계획된 한차례 더 방송될 예정이다.



“정년퇴임 전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 출정과 교감 임춘만

Q 방송 녹화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TV 출연이라고 생각하니 긴장도 했고, 모든 게 생소하게만 다가왔죠. 많은 국민에게 교정 업무를 잘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했던 말을 전부 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Q 인터뷰 준비과정에서 교정공무원 생활을 돌아보셨을텐데 어떠셨나요?

우여곡절 없이 무난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힘이 돼준 선후배의 소중한 새삼 실감했죠. 또한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해서도 되짚는 시간이었습니다.

Q 시청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 속 모습과는 달리 교정시설은 매우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 인권이 신장된 데 비해 아직 교정공무원들의 인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교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교정공무원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입니다!”

서울남부구치소 분류심사과 교위 김환준

Q 방송 녹화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교정공무원으로서도 즐겁고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스태프와 출연자들이 호응을 잘해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상 예능적 요소를 더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촬영 준비를 하며 직업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촬영 전 작가와의 인터뷰로 직업과 그에 따르는 사명감에 대해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자들이 출소할 때까지 교정교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Q 방송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교정시설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교정공무원은 경찰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법과 원리원칙에 의해 수용자들을 24시간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을 통해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했어요.”

서울남부교도소 보안과 교감 천성덕

Q 방송 녹화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주변 동료들의 추천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진솔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촬영을 앞두고 3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족-조직-국가의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근간을 지탱하는 역할이 교정공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옷도 많지만 그중 제일은 교정공무원복’이라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방송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잘 조명되길 바랍니다.

Q 촬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 앞에 선 것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교정시설이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부각돼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교정공무원 생활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참 역할을 되새깁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기동순찰팀 교위 오주남

Q 방송 촬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잘하고 있나, 스스로 되묻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시청자에게 교정공무원의 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Q 녹화를 진행하면서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교정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수용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교화에 충실해 수용자의 재범 우려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역할이죠. 하루하루 사회와 단절된 이에게 손을 내밀어줌으로써 재범 발생 확률을 99%, 98%, 97%로 낮추겠다는 다짐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Q 방송 녹화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한 이야기를 다하지 못해서 아쉬기도 하지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깜짝 놀랐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건 교도관 이야기의 1/10 정도 되겠지만 교정공무원이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주역사

천년의 고도를 빼닮은 고풍스러운 품격

경주교도소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천년의 고도’ 경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로 손꼽힌다. 편리함이 넘치는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랜 세월을 견디며 묵묵히 길러 온 고즈넉한 멋스러움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로 개청 51주년을 맞은 경주교도소도 경주에 버금가는 고상한 품격을 바탕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곳곳에 살아 숨 쉬는 경주의 기품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눈이 내린다고 했는데 막상 경주교도소에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새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야트막한 언덕을 지나 청사 쪽으로 고개를 틀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새파란 하늘보다 더 새파란 기와지붕을 둘러싼 경주교도소 청사가 든든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건물과 담벼락 위에 빠짐없이 얹힌 파란 기와지붕은 경주교도소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신라의 고도에 자리한 교정시설다운 고풍스러운 전경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다. 경주교도소 담벼락의 기와지붕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염두에 둔 장방형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각 구역을 나누는 최창살에도 한국 특유의 기하학적 문양이 담겨 있다. 그래서일까. 1973년 9월에 개청한 비교적 오래된 교도소임에도 시설을 돌아보는 내내 낡았다는 느낌 대신 소박하고 고즈넉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경주의 불교 유적지가 모여 있는 남산의 서쪽 기슭에 터를 잡고 있다는 점도 경주교도소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점이다. 교도소 뒤편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남산의 푸른 전경과 고고한 정기는 분명 수용자 교정교화와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대상 수용자 교육 전담 교정시설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2

신라의 기상을 연상케 하는 활기찬 노력

신라는 삼국시대 초기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특유의 웅골찬 기상으로 끝내 통일의 주인공이 됐다. 경주교도소도 이런 신라의 기상을 실천하기라도 하듯 작지만 내실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보안구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무균소독실은 2021년 10월 설치됐다.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곳을 거쳐야 비로소 내부 시설에 들어설 수 있다. 감염병으로부터 직원과 수용자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수용자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과에서는 각종 진료가 한창이었다. 한편에서는 한 수용자가 2021년 구축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의료과 직원은 차트에 진료 결과를 면밀하게 받아 적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방사선실에서는 공중보건과의 수용자의 엑스레이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수용자가 건강해야 교정교화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과 직원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경주교도소의 부지는 경주 남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시설 증개축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경주교도소는 지속적인 개선 및 보수를 통한 시설 내실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운동장 뒤편의 수용동 외벽에서는 거실 보온 강화를 위한 외단열 공사가 한창이었다. 더불어 얼마 전에는 노후화된 경유 보일러를 최신 천연가스 보일러로 교체, 에너지 절감과 난방 효율 향상을 동시에 이뤄 냈다. 이렇듯 고즈넉해 보였던 경주교도소의 담장 안쪽에는 진심 어린 교정교화와 시설 내실화를 향한 노력이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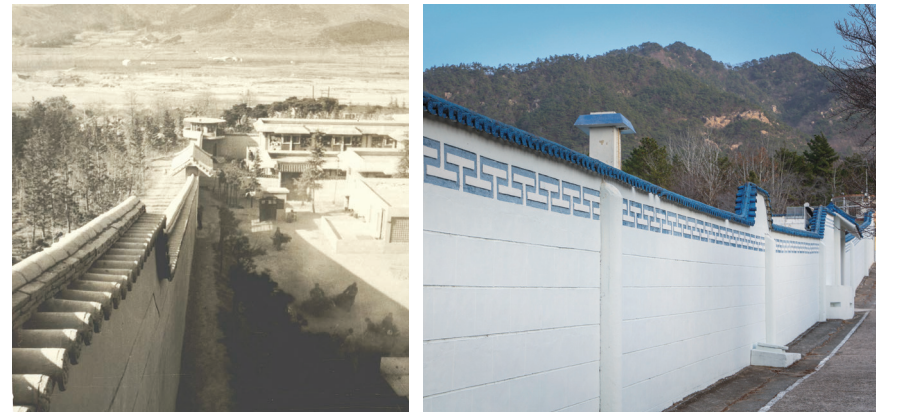
오래됨과 새로움의 아름다운 공존

오후 2시, 보안과 직원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분주해졌다. 수용자 도주에 대비한 도주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직원들은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주고받으며 도주 수용자 위치를 파악했고 실재를 방불케 하는 날랜 움직임으로 신속한 검거에 성공했다. 수용자 교정교화는 법과 원칙에 의한 수용 질서 확립 위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경주교도소는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의 안전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원 업무 공간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야간 근무자를 위한 직원 침실 추가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및 여자화장실 공사, 사위장 확충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비상대기숙소 세탁실 설치 및 순차적 숙소 리모델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와중에 '오래된 것은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경주교도소를 속속들이 둘러보면서 굳이 부수지 않더라도 오래됨과 새로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천년의 고도를 빼닮은 경주교도소 특유의 아름다움과 웅골찬 가치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평균을 넘어 진일보한 미래로

경주교도소 복지과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경주교도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복지과는 늘 주어진 업무 이상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실행한다. 이를 위해 부서와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상향평준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도 성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경주에 어울리는 교정시설을 가꾸다

모든 교정시설의 복지과가 그렇듯 경주교도소 복지과도 시설 관리 및 보수, 직원과 수용자의 물품, 급식, 차량 등을 아우르며 경주교도소가 교정교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바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지나 다름없는 경주의 한편에 자리해 있고 전체 부지가 경주 남산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기에 시설 증개축 등 주요 업무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지만, 강창지 과장은 오히려 이러한 제약이 경주교도소만의 특징점과 개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옥을 보면 웅장함은 덜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오밀조밀하게 갖추고 있고, 단정하고 소박한 맛이 있잖아요. 경



주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청한 지 51년이 됐기에 건물은 오래됐지만 직원의 업무와 수용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마치 한옥과 같은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요즘 지어진 최신식 교정시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주교도소 특유의 멋과 정취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약점이 될 수도 있었던 제약을 이곳만의 강점으로 잘 살린 덕분일까. 경주교도소는 배후에 우뚝 선 남산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고즈넉함을 품고 있다. 이러한 수용 환경은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윈스턴 처칠의 말마따나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니 말이다.



66 복지과는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근로자 안전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사, 쾌적해진 일상

경주교도소 복지과의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흘러갔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화된 경유 보일러를 최신 천연가스 보일러로 전체 교체했다. 아울러 수용동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외벽에 단열재를 보강하는 외단열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로써 경주교도소는 한층 아늑하고 친환경적인 교정시설로 발돋움했다. 직원과 수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이뤄졌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수관 보수 및 낙석방지 공사를 진행했으며, 수용자 취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더욱 위생

적인 취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끄러짐 방지 기능을 적용한 타일로 바닥공사를 수행했다. 이렇듯 바쁜 와중에도 절대 양보하지 않은 단 하나의 절대 원칙이 있었으니, 바로 ‘안전’이다. “아무리 공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안전과 생명만큼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음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과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복지과는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근로자 안전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향평준화된 전문성으로 스케치하는 새해

복지과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통해 경주교도소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과 수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 변화도 이뤄 내야 한다. 모든 직원이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더군다나 복지과가 관장하는 각 분야는 전문 지식과 법령을 잘 알아야 수월하게 진행되기에, 직원들은 맡은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자기계발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각자의 전문성 못지않게 유기적인 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팀워크에 윤희유 역할을 해 줄 제빙기와 머그컵을 선물로 신청했죠. 월간 <교정> 덕분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차와 커피를 즐기며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 협동심을 키울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와 함께 교정교화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안과 직원들을 위해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고 몸을 녹일 수 있는 라면 조리기도 신청해서 전달했습니다. 동료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지난해 교도소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경주교도소 복지과는 2023년을 맞아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직원 침실 개선, 사무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비상대기숙소 생활 여건 개선 등 진행해야 할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복지과는 넘치는 도전정신을 토대로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각오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들이 만들어 갈 경주교도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MINI INTERVIEW



**우리가 행복해야
경주교도소도 행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직원이 각자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공통적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바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일해야 우리의 지원을 받는 직원들과 수용자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다 함께 힘을 합쳐 마음껏 행복한 2023년을 만들어 갑시다!”

복지과 강창지 과장

운동의 세계로 들어선 뜻밖의 손님, 채식

새해를 맞아 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자연스럽게 동물성 단백질 보충에 대한 관심과 제품 구매도 상승하는 중. 이런 가운데 최근 채식으로 경기력이 향상됐다는 프로 운동선수들과 관련 책, 다큐멘터리, 논문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운동과 채식의 색다른 만남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채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과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은 건강과 보기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닭가슴살, 달걀, 유청 단백질 보충제, 지방을 걷어 낸 붉은 살코기 등 동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는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단백질 보충이 중요한 프로 운동선수들 중 채식을 선언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채식 후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향상된 경기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22년 야구팀 SSG 랜더스의 KBO 정규리그 및 한국 시리즈 우승에 일조한 만 38세의 백전노장 투수 노경은 선수는 2020년 초부터 채식을 시작했다. 투수코치의 권유로 다큐멘터리 영화 <더 게임 체인저스(The Game Changers)>를 시청한 것이 계기다. 그는 채식과 유제품, 달걀을 함께 먹는 락토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 Vegetarian)으로서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했으며 남다른 노력에 힘입어 롯데 자이언츠의 중요한 선발투수 자원으로 활약했다. 나아가 지난해 SSG 랜더스로 이적한 뒤에도 12승 평균자책점 3.05의 준

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채식으로 경기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그런가 하면 아스팔트 대신 산길, 초원, 사막 등 자연의 길을 뛰는 스포츠인 트레일 러닝의 자타공인 국내 1인자 김지섭 선수는 열량 높은 음식을 섭취한 다음날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 뒤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채식에 돌입했다. 이후 2022년 6월까지 국내 모든 트레일 러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채식과 함께 세계 최고 대회인 프랑스의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Ultra-Trail du Mont Blanc®, UTMB) 순위권 입상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른바 '채식주의 운동선수'는 해외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테니스 스타 선수 비너스·세레나 윌리엄스(Venus·Serena Williams), 포뮬러 자동차 경기 중 하나인 FIA포뮬러원월드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의 황제 루이스 해밀턴(Lewis Carl Davidson Hamilton),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nglish Premier League, EPL)를 거쳐 현재 AS 로마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크리스 스몰링(Christopher Lloyd Smalling) 등 각 종목 최상위권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채식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속속 밝혀지는 채식의 장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육식=단백질=힘'이라는 공식이 진리라고 배워 왔다. 하지만 동의병원 슬관절센터장 이자 채식을 권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모임인 '베지닥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송무호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를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며 근육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도 식물성 원료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채식을 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폐기능이 향상되기에 근육에 산소와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며 채식이 보통의 선입견과 달리 일상생활과 운동의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혈관 건강은 운동 능력과 깊이 연관돼 있다. 영양분을 담은 피가 온몸에 잘 돌아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더 게임 체인저스>에서는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운동선수 3명에게 하루는 동물성 브리또를, 다음 날에는 식물성 브리또를 제공하고 피를 뽑아 혈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동물성 브리또를 먹은 날의 혈장이 식물성 브리또를 먹은 날에 비해 흐리게 나타났다. 즉, 채식을 함으로써 피가 더 잘 돌 수 있는 혈관 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마라토너이자 웹사이트 '육식하지 않는 운동선수'의 최고경영자인 맷 프레이저(Matt Frazier)가 쓴 저서 <채식하는 운동선수>에도 채식의 장점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 때문인데 아미노산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도 풍부하므로 굳이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기에는 N-글리콜리뉴라민산, 내독소, 험철과 같은 염증성 분자로 구성된 단백질이 함유

돼 있는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에는 염증을 줄이고 미생물 군집과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미네랄, 비타민 등이 두루 들어 있다는 점도 채식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식생활의 정답'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균형적 대사, 근육 및 면역 세포 형성 등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훌륭한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은 근육량을 타고났거나 채식으로 인해 몸이 받는 스트레스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또한 육식과 채식 중 어느 하나만을 정답으로 여기는 시대가 지났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운동 상황과 몸 상태에 따라 육식을 함께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채식과 육식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유연한(Flexible, 플렉시블) 채식주의자(Vegetarian, 베지테리언)인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을 자처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

이렇듯 식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과 논의가 많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식생활에는 왕도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나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식생활을 찾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채식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체질상 육식 위주의 식단이 몸에 잘 맞는 사람도 존재한다. 앞서 이야기한 채식주의 운동선수들은 채식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동시에 채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식생활의 지평을 넓혀 준 공로자들이지만, 이 식단이 우리 모두의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새해가 된 김에 당장 오늘부터 음식에 대한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이것저것 고루 먹고 열심히 운동하자. 이것이 바로 '건강한 2023년'의 정답이다.

근대식 건축의 공주감옥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전 공주교도소장

1. 서(序)

2. 공주감옥의 설치

3. 수용 현황

4. 근대식 건축의 구조

- 가. 서
- 나. 청사 및 부속가옥
- 다. 기결감
- 라. 공장
- 마. 여감방
- 바. 구치감
- 사. 병감 및 의무실
- 아. 취사장 및 목욕탕
- 자. 세탁장 및 우물, 상·하수 설비
- 차. 정문, 외벽 등

5. 결어

1. 서(序)

공주에는 1603년 이후부터 충청감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감영에는 여러 가지 부속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감영이 이전하기 전부터 있었던 외감옥은 군옥(郡獄)으로 추정되며 이곳에 수용된 수인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1895년 공주경찰서 내에 감옥서를 설치하면서부터 공주에는 감옥이 2곳이 되었으며 본감과 분감이라고 불리었다. 본감은 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부근이며, 분감은 현재의 교동성당 부근이다.¹⁾

한편 법부(法部)에서는 1908년 충청관찰도의 경찰로부터 감옥과 사무일체를 인수받아 공주감옥에 대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건물은 본감(내옥)이 3동, 분감(외옥)이 1동이 있었다. 당시 내감옥은 공주군 남부면 하봉리(충청남도 경찰부 부지)의 충청남도 도청 내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약 1km(10정) 정도 떨어진 곳에 외감옥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 당시의 공주감옥은 본래 근대적 형벌, 특히 자유형을 집행하는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더구나 건물이 오래되고 비좁아 지속적으로 개축하여 사용하였으나 감방의 부족으로 인하여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1912년 금정(錦町)에 부지를 매입하여(공주읍 교동 3번지) 신축, 이전하기로 하였다.²⁾ 1914년 1월 공주감옥을 준공하고 같은 해 1월 25일 구 감옥 공주군 남부면 하봉리(충청남도 경찰부 부지)로부터 이전하였다. 그후 1923년 5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72호로써 공주형무소로 개칭하였다. 당시 본감의 부지에는 그 후 공주경찰서가 들어섰다.

2. 공주감옥의 설치

지방의 감옥설치는 1895년 4월 24일 칙령 제82호로 규정하고, 옥사는 '각 지방에 감옥서를 설치하여 종래 존재한 옥사를 이에 충당함'이라고 하여 각 지방 관서에 소속된 기존의 옥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³⁾ 1898년에 이르러 내부대신이 정한 지방경무장정(地方警務章程) 중에는 '각 지방 경찰관 이하 순검(巡檢)은 경무규정을 실행함을 본분으로(중략) 감옥사무에는 재감인의 출입과 명적, 원소(願訴), 급여품, 투입품 및 소지물품, 재감인의 작업, 계호, 서신 및 접견, 행장 및 상여(賞與), 징역처분을 검거할 사항'의 규정이 있었

¹ 본감과 분감의 위치는 1913년 충청남도 토목계에서 작성한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² 매일신보, 1913년 4월 12일자 기사, '各監獄署의 新營'.

³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상), 1997년, 488~489쪽.

다. 즉 지방감옥 사무는 경찰사무와 병행하여 경찰관이 담당하였고, 관제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아직 불완전하였으나 중앙과 지방의 감옥사무는 점차 통일을 기해 갔다.

새로운 행정제도의 시행으로 공주에는 병비(兵備) 및 경찰기관 등 새로운 진영(鎭營)을 마련하였고 그 영내에 유치장(우편국 남측 잠업전습소 자리)을 부설하였으며, 피고인 및 죄가 가벼운 죄수를 수용하였다. 행정에 해당하는 영문(營門, 도청) 내에 있는 금상루(錦商樓) 아래 북쪽 청사 내 대합실에도 일시 피고인을 구금하였다. 1895년 공주부에 경찰서를 두고 서장 경무관보 이철우(李撤宇)가 임관되어 구 감영 영사청(당시 경찰서 검도장의 부지)을 청사로 사용하였다. 경찰서 내에 3개방을 유치장으로 하여 미결수를 수용하면서 이를 내감옥이라 칭하였다. 기결수를 수용하는 하봉촌 구감옥을 외감옥이라 불렀다.

1896년 8월 경무관보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관찰청에 총순(總巡) 박용성(朴鏞聲)을 임명하였고, 순검(巡檢) 30명 중 4명을 갑을 양부로 나누어 격일제로 감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9월 경무서를 구 비장청(備藏廳, 순검보교습소)으로 이전하고 내감옥을 구 방자청(房子廳)으로 이전하였다.

1905년 무렵에는 감옥의 죄수 식비는 매월 4원 이상 15원 이하로, 묶은 족을 급여하였다. 같은 해 경무고문보좌관 다카하시 아사미즈(高橋淺水), 경무관 최인용(崔麟溶) 등을 배치하기 시작하고 감옥개량에 착수하였으며 재감인 식비 및 피복비로 연액 800여 원을 배당하였다.

1905년 12월 서장 경무관을 폐지하고 총순(總巡) 신현두(申鉉斗)를 배치하였으며, 경무고문 지부의 감독을 받아 1906년 4월 면관이 되었고 후임으로 전기완(奎基完)이 부임하였다. 1906년 9월 충청남도 관찰청 경무관서를 충청남도 경무관서라고 개칭하고 경무관 황중준(黃鐘浚)이 부임하였다. 같은 해 경무부금 잔액 300원으로 1907년 3월 감옥을 수리하였다. 법부는 1907년에 충청관찰도(忠淸觀察道)의 공주감옥서를 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아 1908년 공주감옥으로 개칭하였다. 공주감옥은 새로 착임한 일본인 사옥관(司獄官)에 의해 개선에 착수하였으나 옥사의 신·증축은 재정상의 관계로 급속한 기공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구 옥사를 사용하였다.

1908년 한일 경찰권 위임의 결과 고문지부를 공주경찰서로, 경찰서를 분실로 개칭할 때의 보좌관 스즈키(鈴木重民)를 서장에 보하였으며 그해 5월 그는 서무경찰서장에 전보되었다. 그 후임으로 요시나가(吉永助)이 부임하였고 같은 해 7월 공주감옥이 설치됨에 따라 감옥을 전옥 야마다코이찌로(山田虎一郎)에게 인계하였다.⁴⁾

1908년 6월 17일 공주감옥의 전옥(典獄) 야마다코이찌로(山田虎一郎)가 임용되어, 사무인

4 日本監獄協會, 公州刑務所沿革, 監獄協會雜誌, 제25권 제20호, 1912. 12. 24., 100쪽.

<표1> 공주감옥 죄명별 인원표(1908년 10월 31일)

	계	내란	분묘 침해	고살 ⁵⁾	투구 살인	투구 상해	강도	절도	준절도	약인	도후 분적	폭동
기결	174	6	1	1	1	3	97	11	4	2	1	19
미결	74	6	2	1	2		49	2	-	2	-	7
계	248	12	3	2	3	3	146	13	4	4	1	26

	도관 재산	반역	무고	사모 행지 ⁶⁾	위조	투구 관원	구상 친속	혼인 위법	전매 유위	위생 방해	도기
	1		3	1	13		1	2	1	5	1
		1				1		1			
	1	1	3	1	13	1	1	3	1	5	1

※ 朝鮮舊時의刑政

<사진1> 공주감옥 전경



5 고살(故殺): 고의로 사람을 죽임.

6 사모행지(詐冒行止):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동거지.

수의 준비에 들어가 같은 해 7월 16일 개청하고 23일 수용자 및 사무를 공주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았다.

1914년 신축 이전한 근대식 공주감옥은 정문이 동쪽 방향으로 위치하였고 청사와 기결감, 여감은 동서 방향으로 건축되었으며 구치감, 병감, 공장동은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바로 옆 동쪽에는 제민천이 흐르고 있었고, 도로는 제민천과 나란히 개설되어 충청남도 도청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초기에 내부 건물은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건물이었다. 총평수는 약 43,060평으로 부지는 17,921평, 경운지 및 기타 약 25,400평, 건평은 1,365평이었다. 외벽으로 둘러쌓인 구내부지 모양은 약 100m의 정사각형이었다. 공주감옥은 1919년 이후부터 감방 및 공장의 증축이 이어졌다. 1923년 공주형무소로 개칭되고 난 이후 작성된 설계도면(1928년)을 보면 한쪽 면이 동쪽과 서쪽으로 약 100m, 남쪽과 북쪽으로 약 137m로 늘어났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의 과정을 거쳐 일제 말기인 1930년대 후반에는 수용동 5동과 공장동 6동 등을 갖춘 모습이 되었다.

3. 수용 현황

공주감옥(형무소)에 수용된 수감자는 대략 사오백 명 정도로 대다수가 남자였다. 여자수감자는 따로 수용되어 여직원의 통제를 받았다.

1925년 공주감옥의 수감자 수는 372명(남자 331명, 여자 41명)이었으며,⁷⁾ 1926년에는 총 892명으로 늘어났다. 그 내역은 강도가 56명, 강도살인미수가 53명, 절도가 260명, 사기가 180명, 횡령이 193명, 과료 기타 잡범이 130명이었다.⁸⁾ 그 이듬해에는 517명으로 줄었다.

1937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법무국 수감자 수용구분에 따르면 공주형무소는 10년 미만의 남녀 수감자를 수용하는 기관이었다. 1937년에 공주형무소 수감자 수는 총 725명으로 남자 654명, 여자 71명이었다.⁹⁾ 죄형을 보면 절도범과 강도범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여수감자 수가 1938년에 급격하게 줄어 4, 5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전형무소에 여감이 신설되어 이감되었기 때문이다.¹⁰⁾

7 매일신보, 1915년 11월 18일자 기사에는 '충청남도: 공주감옥의 現況'에는 수감자 수는 372명이었는데, 죄목별로 보면 강도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죄는 77명이었다.

8 시대일보, 1926년 6월 24일자 기사, '公州刑務所囚人 892명'.

9 동아일보, 1938년 1월 20일자 기사, '大田刑務所에도 女囚收容所 設置'.

10 조선총독부 「형무소 수용구분에 관한 건」, 1937년(국가기록원 제공).

<표2> 연도별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국적			성별		합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남	여	
1911	468	10	4	448	34	482
1912	421	18	2	404	37	441
1913	325	2		290	37	327
1914	344	11	1	322	34	356
1915	371	17	1	352	37	389
1916	407	12	6	388	37	425
1917	513	8	6	473	54	527
1918	459	11	7	438	39	477
1919						855
1921	559	4	5	512	56	568
1922	506	12	1	476	43	519
1923	451	5	4	421	39	460
1924	420	13	3	408	28	436
1925	491	16	2	473	36	509
1926	511	14	1	476	50	526
1927	512	11	1	474	50	524
1928	456	9	1	432	34	466
1929	590	6	3	560	39	599
1930	705	5	3	652	61	713
1931	554	1	4	518	41	559
1932	579	4	1	547	37	584
1933	595	11		565	41	606
1934	544	8	4	514	42	556
1935	580	7	2	543	46	589
1936	626	8	4	602	36	638
1937	717	6	2	654	71	725
1938	475	5		476	4	480
1939	555	7		558	4	562
1940	422	2	1	416	9	425
1941	438	2	6	434	12	446
1942	410	4	1	406	9	415
1943	312	3	1	305	11	316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국가통계포털)

4. 공주감옥의 건축적 구조

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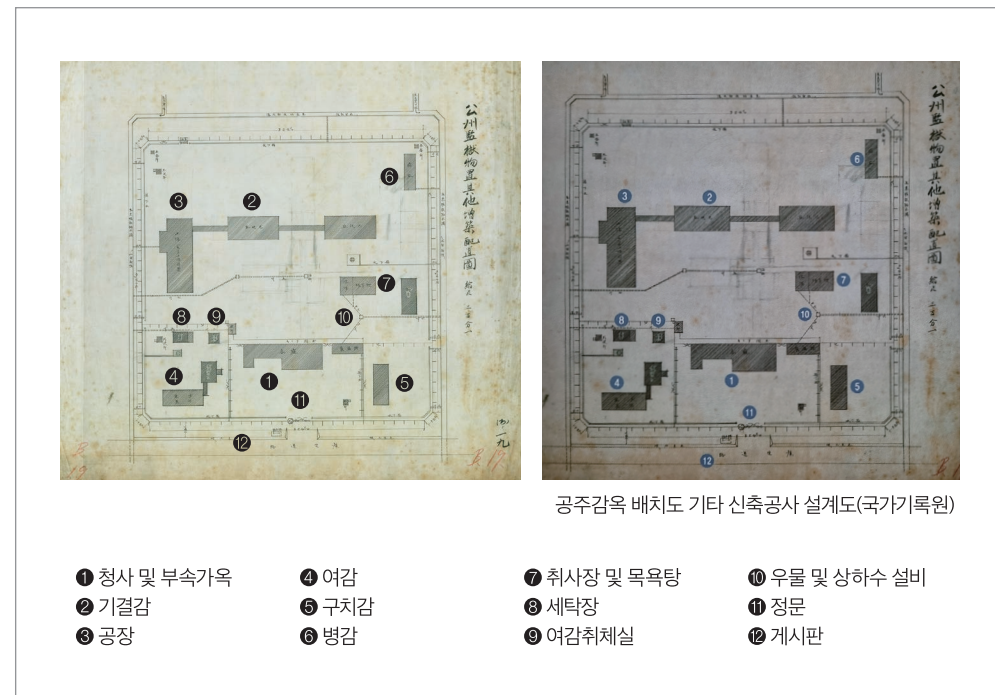
‘공주감옥 배치도 기타 신축공사 설계도’는 새로운 부지에 이전 신축을 위해 작성된 도면으로 장방형의 부지에 전면 중앙에 정문을 배치하고 그 안쪽에 청사가 배치되었으며, 청사 좌우의 별도의 구획에는 여감과 구치감을 배치하였다. 여감과 구치감은 기존 건물을 이축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청사의 좌우측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구내로 출입을 하였고, 구내 행형구역에는 회랑으로 연결된 기결감 2동이 신축되었으며, 공장은 기존 구 공주감옥의 건물을 이축하였다. 이외에 구내에는 취사장, 창고, 병감 및 의무실, 외변소 등이 신축되었다.

나. 청사 및 부속가옥

배치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사동은 청사 및 부속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문 안쪽에 청사가 있고, 오른쪽에 부속건물을 두었다.

청사는 약 100평 정도의 목조 단층건물로 신축되었으며 다른 감옥의 청사와는 다르게 독특

<사진2> 공주감옥 배치도



<표3> 공주감옥 직원 현황(1918년)

	계	전옥	간수장	교회사	약제사	간수	여감취체 (取締)	수업수 (授業手)	용인 (傭人)
한국인	33		1			25			7
일본인	48	1	5	1	1	33	2	2	3

※ 1919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제370표

<사진3> 청사



하게 계획되었다. 감옥의 창문과 축을 맞추어 장방형의 건물이 계획되었고, 그 좌측으로 폭이 적은 건물이 ‘ㄱ’자로 연결된 형태이다. 청사와 나란하게 행형구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용문을 사이에 두고 부속채가 있었다.

청사의 본체 입면은 좌우 대칭으로 계획되었으며 현관의 상부에 목재로 아치장식과 박공을 설치하여 장식하였다. 벽면은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으며 내부에는 현관에서 이어지는 복도의 좌우로 전옥실(典獄室)과 회의실, 제1과 사무실, 제3과 사무실이 배치되었다. 좌측의 연결된 건물에는 숙직실, 신체검사장, 제2과 사무실, 휴게실 2곳이 배치되었다.

통상적으로 청사에는 소장실, 서무영치계, 용도계, 작업계, 경리계, 조사실 및 숙직실이 있으나 공주감옥에는 수감자를 관리하는 계호계도 청사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청사 옆에 나란히 건축된 부속가옥은 비늘판벽의 간소한 건물로 건축되었으며 내부에는 대기실, 접견실, 물품수탁장, 사환실, 탕비실 등이 설치되었다.

다. 기결감

1) 신축

신축 시 기결감 2동이 건축되었으며, 모두 중복도 형태이다. 한동은 한쪽에 혼거실 5개씩 총 10개 거실이 있었고, 나머지 한동은 한쪽에 혼거실 5개와 다른 한쪽에 혼거실 4개와 독거실 2개가 있었다. 감방의 중앙에 복도가 있고, 이 복도는 회랑으로 연결되어 공장까지 이어졌다. 복도의 상부에는 채광창이 설치되었으며, 두 건물 모두 단층의 목조건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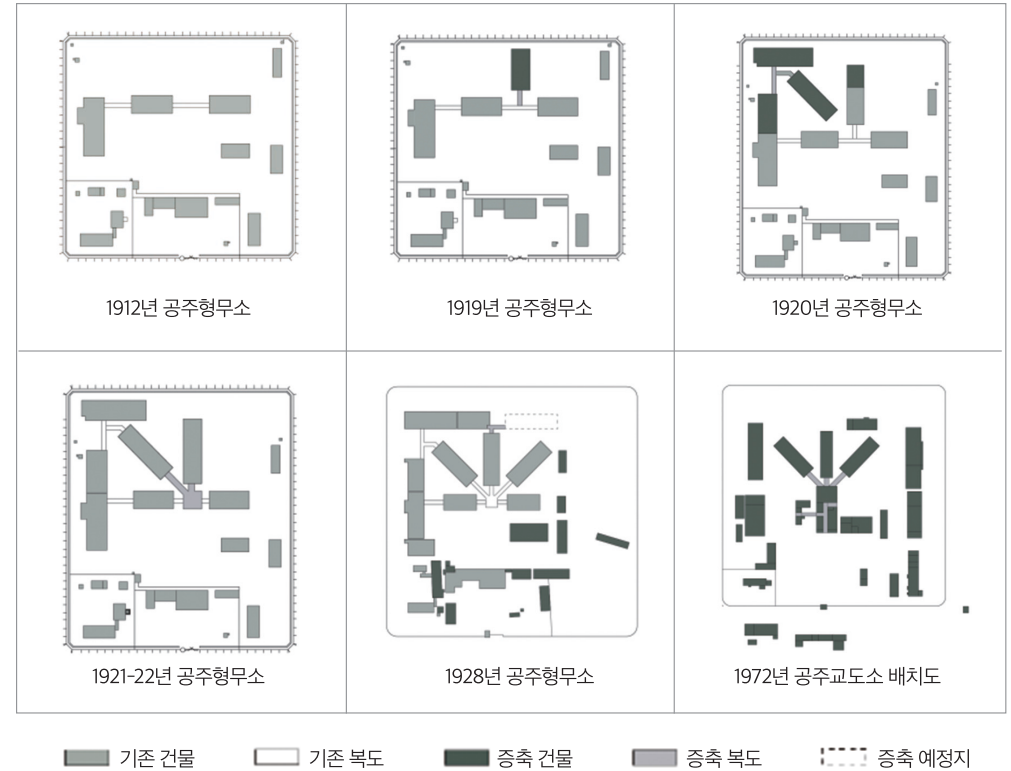
2) 증축

감방은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여러 차례 증축을 하였다. 1919년 4월에는 남북으로 나란히 있는 기결감 2동 사이에 서쪽 방향으로 직교하여 단층의 목조건물의 감방 한동을 증축하였다.¹¹⁾ 감방은 중복도식으로 한쪽에 혼거 4실, 다른 한쪽에는 혼거 4실과 독거 2실이 배치되었다. 이 감방과 기존 2개의 감방은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그 후 부지 후면에 또 하나의 감방이 더 신축되어 있었는데, 이 감방은 기존의 기결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증축되어 회랑을

<사진4> 수용동



11 공주감옥 감방 기타 증축공사 설계도(국가기록원) 참조



통해 공장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1920년 2월에는 감방을 증축하여 기존의 감방에 이어붙이는 한편 다시 한동의 감방을 신축하여 회랑으로 다른 연결통로로 연결하였다. 이 당시 감방은 총 5동이 완성되어 수용능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증축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3·1운동으로 재감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영등포형무소는 1924년 12월에 폐소되어 동소의 각 건물이 전국 형무소로 분할되어 이전되었으며, 1925년 공주형무소와 청주지소에 각 한 동의 수용동이 이축되었다. 1920년에 신축된 감방과 대칭의 대각선 방향으로 원래 영등포형무소의 감방 1동을 이축해 오는 계획이 그려져 있다. 이 수용동에는 한쪽에 혼거실 7개와 독거실 1개로 모두 혼거실 14개와 독거실 2개가 있다.

1928년에 공주형무소 배치도에는 수용동이 방사형으로 완성되었으며, 중앙에 중앙간수소가 위치하여 여러 수용동을 한 곳에서 신속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간수소 2층에는 연설 단상을 갖춘 교회당(敎悔堂)이 위치하였다. 이 중앙간수소는 한국전쟁 이후 복구한 공주형무소의 중앙감시소의 위치와 일치한다.

1939년 배치도를 보면, 감방 5곳의 중심에 중앙간수소가 있고 별도의 감방 1동이 있다. 공장은 정문에서 볼 때 우측에 공장이 더 설치되어 총 5동이 되었다. 예전에 공장이었던 곳 일부

를 교회당으로 사용하였으며,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벽 밖에도 공장과 축사가 있었다.

1912년의 도면과 비교해 보면 우선 부지의 후면과 우측이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사 좌측의 여감과 구치감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감방과 공장 역시 지속적인 증축 및 신축공사가 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공장

공주감옥 신축 시 공장동은 재래감옥에서 이축한 것이다. 재래감옥의 공장동은 ‘ㄱ’형태였으나, 이전한 공장은 ‘—’자형으로 마루바닥인 공장과 흙바닥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흙바닥의 공장에는 세면장과 화장실(대변기 2, 긴 소변기 1)이 설치되었으며, 회랑을 통해 기결감으로 연결되었다. 1914년 신축시 공주감옥에는 공장동 2동이 건축되었으며, 그 후 수감자의 증가에 따라 공장은 지속적으로 증축되어 1930년대 후반에는 7동이 들어섰다. 1938년에 대전형무소로 여성수감자가 이감되어 전체 수감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때도, 옥사는 줄이 되 공장은 오히려 늘렸다.¹²⁾

공주형무소에서의 작업은 노무작업과 관용작업, 도급작업이 시행되었다.

<사진5> 공장 내부



1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5335: '女工場及行刑區劃板移轉の件(公州刑務所長)'.



목공에 해당하는 지물공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생산품은 양복장, 탁자, 학생책상, 조선장농, 의자, 경대, 회전의자, 담배상자 등 42품목에 이르렀으며 관용작업을 주로 하였고 위탁작업에 따라 경영하였다. 판매처는 공주형무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일원이었다. 양재봉공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공주를 비롯하여 인근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품은 양복, 오바, 학생복 등 11개 품목에 이르렀으며, 관용작업을 주로 하면서 위탁작업도 시행하였다. 1923년에는 공주군 부업공진회가 열렸을 때 공주형무소가 출품한 백제포(百濟布)가 2등상을 받았다.¹³⁾ 혁공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운영되었다. 생산되는 제품은 고무화, 단화, 백단화, 학생화, 아동화, 슬리퍼 등 15개품목에 이르렀고, 각종 수선도 하였다. 당시 축산은 소, 돼지, 토끼를 사육하는 것이었다. 생산되는 제품은 우유, 송아지, 새끼돼지, 햄, 고기, 뼈, 돼지기름 등이었다. 생산된 우유는 전부 공주읍내에서 소모하였는데 항상 공급부족상태였기에 상당한 확장을 필요로 하였다. 양돈은 주로 새끼돼지를 길렀고 공주 인접 군과 협정하여 충청남도의 방침인 1가구 1두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부업으로 햄을 제조하였으며, 점차 수요자가 증가하여 본업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914년 신축 당시 경운지는 약 25,400평이었다. 경운은 쌀과 야채 등을 재배하였다. 수감자의 노동은 형무소 내 공장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외부의 토건사업에 동원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민천 제방공사와 영명학교 신축공사가 있었다. 1930년 영명여학교 신축 당시 기초공사 과정에서 땅을 다지는 청부작업을 공주형무소가 맡았다.¹⁴⁾ 공주형무소가 행한 토건사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제민천 제방공사이다. 1939년 제민천 축제공사에 공주형무소가 입찰하여 5,800원에 수주하였으며, 1939년 8월 10일부터 다

13 매일신보, 1923년 5월 7일자 기사, '충남의 상공시설(육)' / 매일신보, 1923년 11월 9일자 기사, '副共公州入賞數'.

14 매일신보, 1930년 4월 15일자 기사, '永明여학교의 教室을 新建築'.

음 해 1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0명을 출역(出役)시켜 산성교에서 제16호 구간까지의 제방의 길이 372m를 완공하였다.¹⁵⁾

마. 여감방

여감방은 정문으로 들어가 청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고 판재 담장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역에는 여감방, 공장, 세탁장, 취체실(取締室)이 있었으며, 후에 공장이 증축되었다. 여감방은 4실이 있었으며, 2실은 구 감옥의 감방을 이전하여 조성한 감방이다. 공장의 크기는 36.2평이었다. 이 여감방에 1919년 4월 10일부터 6월 10일경까지 유관순 열사가 약 2달 정도 구속되어 있었다.

3·1운동 당시 공주감옥 여감에는 여성 1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공주에서 3·1운동에 참여한 김현경, 박루이사, 이할란, 아산 백암동 3·1운동을 주도한 교사 한연순과 김복희, 아우내(병천)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과 신씨 할머니 그리고 천안과 직산의 3·1운동을 주도한 황금순, 민옥금, 한이순 등이다. 여감 감방에서 머리가 반백으로 키가 멀썩하게 큰 신씨 할머니는 “요 앙큼하고 불어우 같은 년아! 만세를 불러서 요모양 요꼴로 독립이 되었구나. 아이고 분하고 원통하다. 네까짓 년의 말을 들은 내가 미친년이다.”라고 하고 더 심한 악담과 저주를 하는 때도 많아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들어온 관순을 위로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황금순, 민옥금, 한이순은 사식이 들어오면 간수 몰래 유관순과 나누어 먹다가 들켜서 야단을 맞은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¹⁶⁾

1938년 수용구분의 변경에 의해 공주에 수감되었던 여자수감자가 대전으로 이송됨에 따라 70여 명이었던 여감의 수감자가 평균 4, 5명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여감의 공장은 사용되지 아니하여, 1939년 10월 11일 공주형무소장이 교회당 및 교육장의 활용을 위해 구내의 판자벽을 이전하여 여감을 축소하는 방안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15 1939년 8월 9일 공주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토목작업에 관한 건'(국가기록원).
1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 여성의 삶과 자취' 2018.

<표4> 공주감옥(형무소) 환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환자수	1,067	921	590	512	557	663	617
연인원	21,394	15,404	9,201	8,581	7,821	8,257	9,873
1일평균인원	58.6	42.2	25.2	23.5	21.4	22.6	27
치료	1,029	898	570	490	540	637	591
연말현재	38	23	20	22	17	26	26

구분	1918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환자수	848	616	646	393	718	505
연인원	11,752	9,186	8,425	6,421	9,198	9,188
1일평균인원	32.1	25.1	23	17.5	25.2	25.1
치료	816	587	646	378	698	494
연말현재	32	29	0	15	20	11

구분	1927년	1928년	1929년	1931년	1932년	1933년
환자수	509	553	620	310	360	565
연인원	10,125	9,073	9,246	6,895	6,982	8,599
1일평균인원	27.7	24.8	25.3	18.8	19.1	23.5
치료	494	539	602	302	348	549
연말현재	15	14	18	8	12	16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국가통계포털)

바. 구치감

신축 당시 구치감은 구 공주감옥의 감방 시설을 이전하여 건축하고, 복도는 신축하였다. 건축 시 목재 등 부족한 건축자재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치감은 청사의 오른쪽에 위치하였으며, 거실은 모두 4개이고 미결수가 수용되었다.

사. 병감 및 의무실

공주감옥 신축 시에는 병감을 두고 의무실은 없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감에 인접하여 의무실을 신축하였다. 양쪽 모두에 외변소와 초소가 담벼락을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의무실에는 진료실, 수술실, 약제실이 있고 병감에는 혼거 2개, 독거 2개방이 있었다.

아. 취사장 및 목욕탕

취사장과 목욕탕은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 취사장에는 솔이 6개 설치되어 있고, 풍려분장(風焚場)으로 솔에 불을 지피고 풍로로 바람을 불어넣어 불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리대에서 부식을 조리하였다.

목욕탕은 욕탕과 탈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욕탕에는 욕조와 수조가 있었으며, 욕탕의 물을 데우기 위한 설비가 취사장 내에 마련된 풍려분장(風焚場) 옆에 설치되어 있었다. 취사장 바로 앞에는 우물이 있었으며,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다. 취사장의 우물설치 도면은 세탁장의 우물과 비교할 때 형태와 규모가 달랐다.

자. 세탁장 및 우물, 상·하수 설비

세탁장은 여감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수용자복 등의 감옥내 세탁은 세탁장에서 여자수용자들이 하였다. 세탁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물이 있었으며,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을 퍼올려서 사용하였다.

당시는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설비는 시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시설별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도면에는 우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설비에 대한 설계도가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당시 감옥이 위치했던 곳이 제민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였다.

우물은 취사를 위해 취사장 인근, 세탁을 위한 여감내, 그리고 목욕을 위한 설비에 인접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물이 있는 곳에는 하수시설이 노출되어 있고 사용하고 버리는 물은 그 설비를 통해 외벽 밖으로 흘러나갔다.

공주에 상수도 시설이 준공된 것은 1923년 3월이었으며, 1919년에 공주전기회사(자본금 20만 원)가 만들어져 1921년 9월부터 전등설치사업이 시작되었다.¹⁷⁾ 하수구 공사는 1930년대에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하였고, 15만 원의 비용으로 제민천 개수공사를 하였다.

공주감옥의 분뇨처리리는 관용작업으로 위생부가 담당하였다. 변 등을 날라 외벽 북쪽에 마련된 분뇨 처리설비에 버리면 밖에서 퍼서 경운지 등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전쟁 이후 하수시설이 정비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17 정평순(鄭平淳), 공주 근대건축의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년 8월, 27쪽.

<사진6> 정문



차. 정문, 외벽 등

정문은 초기에 목재로 만들었으나 1920년 이후 벽돌구조로 변경되었다. 청사가 정문 안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정문을 통해 청사로 출입하였으며, 청사 옆 부속건물에 접견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민간인도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경우 정문을 통해 출입하였다. 나중에 정문 밖에 간수훈련장이 만들어졌다.

1914년 준공 당시 외벽은 나무판자벽이었다. 안쪽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늘판벽으로 만들었고, 바깥쪽에는 지지대 등으로 버팀목을 세웠다. 그리고 당시에도 게시판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후 나무판자벽은 모두 벽돌구조의 외벽으로 교체가 진행되어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였다. 1929년 작성된 공주형무소 벽돌벽 신축공사 설계도로 보아 이 시기에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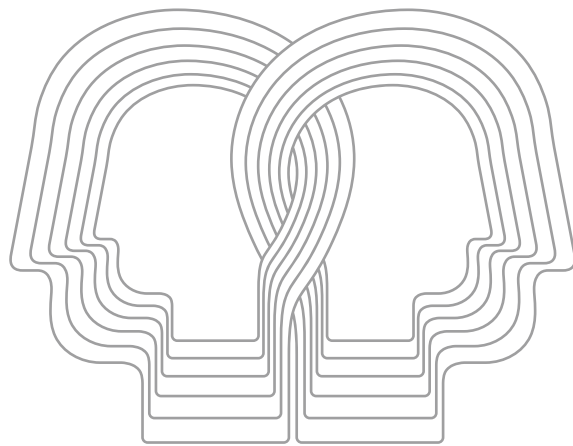
1930년대 이후 정문 안쪽에 재감자가 만든 제품의 전시판매장이 있었으며, 이 상설판매장을 통해 작업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매년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였고, 인근지역 관공서 등에서도 판매행사를 개최하였다.¹⁸⁾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 가격이 저

18 충남 예산에서는 12월 21일 예산경찰서에서 공주형무소 작품의 대역가판매가 있었다. 때마침 직원들은 보너스와 봉급을 수령한 당일 이어서 판매가 매우 양호하였다(부산일보, 1927년 12월 25일자 기사).

렵하고 품질도 양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는 당시의 신문기사도 있다.¹⁹⁾ ‘공주형무소 판매행사 성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공주형무소에서는 예년과 같이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연무장에서 공주형무소 제품인 장롱, 기타 가구 등 각종 목공예품의 판매회를 개최하여 우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실려있다.²⁰⁾

5. 결어

일제강점기의 행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옥제도를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한 것으로만 평가하였다. 즉 일제의 행형관계 법규는 일본 행형법규를 그대로 적용하여 외형으로는 근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고 목적형주의를 표방하여 수형자에 대한 교화, 누진처우제도 및 가출옥 제도 등을 일부 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선감옥령을 제정하여 총독의 명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형과 예방구금을 인정하였고,²¹⁾ 교육은 황국신민화와 민족말살을 도모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등 민족적 차별과 응보주의적 행형을 시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시대의 행형운영에 대한 연구가 교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거나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를 하면서 당시의 행형운영을 편향된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 자료만을 인용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와 같은 연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기술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근대



19 매일신보, 1929년 11월 9일, '客地片片'. 보령에서 생산되는 회흑색의 광택이 나는 수성반석으로 버릇들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품질이 좋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 매일신보, 1923년 12월 24일.

20 부산일보, 1939년 11월 8일자 기사.

21 허주옥, 앞의 책(2013년), 168쪽.

행형에 대한 연구가 객관적 사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형사에 있어서 시대적인 단절을 가져왔고, 현대 교정철학과 교정정책을 표류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미래 교정에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각종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교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제도가 만들어졌고 실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수용자에 대한 의식주와 보건의료는 물론 규율과 질서의 유지,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처우는 초보적인 형태이거나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지만 국가형사사법운영 체제의 구성부분으로 자리잡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참고 문헌〉

- 공주교도소, 1500年の時間과 空間 -공주교도소史-, 2020년 7월
-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Ⅲ: 법원·형무소 편』, 2010년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002년
- 노르베르트 베버,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판사, 2012년
- 대전지방교정청, 『충청지역 전통 옥(獄)터 및 형벌문화 답사 기록』, 2014년
- 박범, 「조선후기 공주읍치의 구성과 행정도시 공주옥」, 공주목 복원정비의 체계적 방향설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년
-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교정사 I, II, III』, 2010년
- 송충기, 『토건(土建)이 낳은 '근대' -일제강점기 공주의 풍경』,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2017년
- 윤용혁,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 『웅진문화』제4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92년
-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1999 여름호 제22권 제2호, 1999년
- 日本治形協會, 『朝鮮刑務所沿革史』, 1939년(일본 교정협회 소장)
- 임재표,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원형옥과 홀형을 중심으로-」, 단국대박사학위논문, 2001년
- 中橋政吉, 『朝鮮舊時の刑政』, 朝鮮治形協會, 1936년 12월 25일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0년~1943년
- 조선총독부 법무국 朝鮮治形協會 / 금용명 譯, 『조선형무소사진첩』, 2020년
- 조선총독부 법무국 朝鮮治形協會, 『朝鮮の行刑制度』, 1938년 2월 20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을 빛낸 독립운동가』, 2012년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 여성의 삶과 자취』, 2018년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김영대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영월교도소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신장애 수용자

제1절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법령 검토

제2절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의 외국 사례

제3장 정신질환 수용자의 실태 조사

제1절 자료수집 및 절차

제2절 연구 대상

제3절 제언

제4장 결론

국문 요약

전국 53개 교정시설은 현재 정신장애 수용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와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감호 처분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치료감호 처우가 필요한 정신장애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 과밀 수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서구의 경우, 정신장애 범죄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탈시설화’, ‘다이버전’ 등 사회내 처우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의 시설내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의 강화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서울남부구치소 등 6개 교정기관에서 총 269명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임의로 선정하였으나 대상자 중 자신이 정신장애자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42.0%를 차지하였다. 응답내용 중 자살생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12.7%, 교정시설 내에서 5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대상자가 응답자 전체의 2.4%를 차지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적 질환에 대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약 73.0%가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7.4%가 정신질환 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의 문제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감호, 정신치료, 교정처우, 사회내 처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6년 5월, ‘강남역 문지마 살인’을 비롯하여, 2017년 3월, 인천 8세 초등학생 유괴 및 살인 사건, 2018년 7월에 발생한 30대 조현병 남성의 어머니 살해 사건 및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 40대 조현병 남성의 경찰관 살해 사건 등 각종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문지마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가 주로 조현병 환자라는 보도가 자주 언급되면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과 관련된 2019년 경찰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¹⁾ 2019년의 경우 전체 범죄자는 총 1,585,638명인데 이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는 총 7,763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약 0.5%를 차지하였다. 반면,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총 범죄자 28,943명인데 이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는 총 600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 중 약 2.1%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도범죄는 총 범죄자 중 정신장애 범죄자가 약 1.9%를 차지하였으며, 폭력범죄자의 경우도 정신장애범죄자가 약 0.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7월 ~ 2016년 11월 사이 실시한 「정신질환자 실태 역학조사」²⁾ 결과에 따르면, 주요 17개 정신질환에서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³⁾이 18세 이상 성인기준으로 약 25.4%(男: 28.8%, 女: 21.9%)로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표1>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2,177명에 불과하던 정신질환 수용자가 2019년에는 4,748명으로 거의 2배 이상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 현황(2012~2019년)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2,177	2,607	2,560	2,880	3,296	3,379	3,665	4,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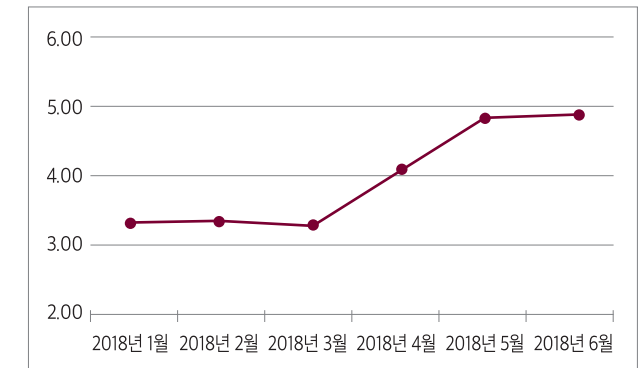
출처 : 2020년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교정본부, 2020) 재구성⁵⁾

이와 더불어, 서울00구치소⁶⁾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급증에 따른 교정처우의 대책 마련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자체 조사를 <표2>와 같이 실시한 결과, 2018년 1월 이후 정신질환 수형자가 매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 6월에는 정신질환 수형자가 117명으로 동년 월평균인 89명에 비해 28명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서울00구치소 전체 수용인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의 수용 비율도 2018년 1월 3.30%에 비해 6월 4.89%로 급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 경찰청, 2019년 경찰통계연보, 제63호, 2020, 145면. <https://www.police.go.kr>
 2 2016년 7월 ~ 2016년 11월 사이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의 만18세 이상인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는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통계지침(DSM-IV)을 기반으로 개발된 K-CIDI(한국판 정신장애 진단도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3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4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실태 역학조사, 2016, 12면.
 5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2020, 97면.
 6 연구와 관련하여, 해당 교정기관에 협조를 얻은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자체 조사한 통계를 인용하였기에 교정기관의 명칭을 밝히지 않음.

<표2> 서울00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2018년 상반기)

구분	인원	수용비율
'18. 1.	71명	3.30%
'18. 2.	71명	3.32%
'18. 3.	71명	3.28%
'18. 4.	90명	4.07%
'18. 5.	111명	4.85%
'18. 6.	117명	4.89%
누계	531명	



출처 : 2018년 상반기 서울00구치소 자체 조사

또한, <표3>과 같이 서울00구치소에서 2018년 상반기 정신질환 수용자의 조사 및 징벌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폭언 및 폭행이 총 51건 중 28건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소란 및 직원폭행 등도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신질환 수용자의 폭력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서울00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조사·징벌 현황(2018년 상반기)

(단위: 건)

건수	규율위반	싸움	폭행	직원 폭행	소란	폭언	기물 파손	입실 거부	지시 불이행	기타
51		1	13	4	5	15	1	3	3	6 (모욕 등)

출처 : 2018년 상반기 서울00구치소 자체 조사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조사·징벌 처우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시설물 손괴, 고성, 욕설, 수용자 및 직원 폭행 등 전반적인 수용질서 문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정사고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최근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고,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학 및 교정학계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 및 처우에 관한 연구와 정신장애 수용자의 의료제도 개선 및 외국 교정처우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사회방위 및 복지 측면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 강화의 필요



성을 강조한 연구,⁷⁾ 교정시설의 폭력문화를 정신질환 측면에서 진단하여 의료처우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⁸⁾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를 위한 통합적인 법규 마련의 필요성 연구,⁹⁾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재범방지 연구¹⁰⁾ 등이 있다. 그 외 외국의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와 관련된 연구¹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처우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 영국 및 이탈리아 등 서구 유럽의 경우, 1950년대 이후부터 치료효과가 낮은 수용중심의 치료 방식(정신의료시설에 장기입원, 수용관리) 대신 지역사회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전환하는 ‘탈시설화’ 치료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방향을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서구 유럽 국가들처럼 ‘탈시설화’가 촉진되어 입원환자가 감소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도 개선되리라 기대했었다.¹²⁾

그러나 외국의 ‘탈시설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강제입원’과 같은 제도로 인해 정신질환자임이 알려지는 순간 정신병원에 격리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오히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병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교정시설에 재수용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수용처우 및 사회내 처우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제

7 김경화, “정신장애 범죄자의 교정처우”, 교정복지연구, 제35호, 2014, 33-70면.

8 허경미, “범죄자의 폭력심리와 교정시설의 폭력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6호, 2010, 287-310면.

9 류은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8호, 2015, 99-128면.

10 김명철, 이승우, 이윤호, “정신장애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평가”, 교정연구, 2015, 183-216면.

11 성경숙,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2010, 87-108면; 허경미,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략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2016, 27-50면; 강경래,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0, 171-203면.

12 김문근, 하경희,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 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43권 제3호, 2016, 31-57면.

도들을 살펴보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수용처우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수용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교정 현장에서 정신장애 수용자의 처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및 법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남부구치소 등 6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용자는 총 269명이었으며, 조사가 끝난 설문지 중에서 응답 질문지에 한 가지 답으로만 표기한 불성실한 응답 질문지 3부를 제외한 뒤, 총 266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¹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도분석은 결측값이 포함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제외된 유효값이 포함된 케이스만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제2장 정신장애 수용자

제1절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법령 검토

1. 정신장애 수용자의 처우 관련 국제 규범

유엔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¹⁴⁾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전문의 및 국가 또는 민간 의료보건 체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신입 수용자에 대한 필수적 신체·정신장애 여부를 검진하고, 의료진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수용자의 치료 관찰 및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는 구금시설에 수감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빨리 치료시설로 이송하고, 필요한 경우 수용자의 석방 후 지역사회의 민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신과적 치료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13 회귀분석은 연속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으로서,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범주를 가질 때 독립변수에서 결과변수의 범주를 예측하는 분석방법이다.

14 1955년 8월 30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유엔이 채택하였으며, 1957년 7월 31일에 1차 개정, 1977년 5월 13일에 2차 개정되었다. 2장 108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의 내용은 제22조~제25조 그리고 제82조~제83조에 규정되어 있다.

15 최영신, “교정처우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9권 3호, 2015, 255-277면; 허경미, “교도소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관련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2권 제2호, 2017, 74-76면.

또한 ‘유엔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원칙’¹⁶⁾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기본적 자유 및 권리를 지니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원칙으로는 개별처우, 최소한의 자유 제한, 유엔의료원칙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현재 정신병이 진행 중이거나 정신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국제 규정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12조 및 제25조¹⁷⁾가 있으며, 1982년 채택된 유엔총회결의문,¹⁸⁾ 1995년 채택된 세계의학협회 성명,¹⁹⁾ 2006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라네스버그 WMA 총회 개정, 2004년 9월 22일 제896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에 관한 유럽이사회 각료회의 2004 권고안 제10호’, 2004년 10월 6일 채택된 지적 장애인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 등이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²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한다. 이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와 구별되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취지에 따라 정신질환 수용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95조(보호실 수용)를 살펴보면, ‘수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중 어느 규정에도 정신적 질병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신적 질병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실정이다. 향후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효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법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2항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정신적 검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령상으론 알 수

16 이 원칙은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으며, 회원국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정신건강 서비스를 25개의 조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장애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한 조문은 제1조, 제9조, 제20조에 있다.

17 제12조(법원의 평등), 제25조(건강)

18 1982년 12월 18일 유엔총회 결의문 37/194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처벌에 대해 저항하는 수용자 및 구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특별히 의사의 역할에 대한 유엔의료윤리원칙이다.

19 1995년 9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제47차 총회에서 채택된 성명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20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1950년 제정된 「행형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행형법이 인권존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전부 개정되었으며, 이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12월 2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모두 5편 및 13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신질환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제2편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및 제39조(진료환경 등)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다만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3조(신입자 건강진단) 제1항 및 제3조의 3(정신건강검진)에 의거하여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실무자가 아닌 경우 신입자에 대한 정신적 검사실시의 근거를 알기 어려우므로,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신적 검사의 내용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2항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인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9조(정신질환자)에 따르면, 이송치료 대상 정신질환 수형자는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기분(정동)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잔형기가 3월 이상인 수형자의 경우 치료중점교도소(진주교도소)에서 이송하여 치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증상이 경미한 자는 제외하고 있어 이송 치료 대상이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형집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의 진단 및 치료를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동법 시행규칙도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처우 규정은 없고, 제73조(기본수용급) 제8호에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별도 수용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약한 실정이다.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²¹⁾은 기존의 「치료감호법」을 2015년 12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법률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치료감호대상자²²⁾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마약류 등에 대한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소아 성기호중,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 성적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정신장애 범죄자와 정신장애가 심각하여 치료가 반드시 필

21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8개의 장과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요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구분 없이 모두 치료감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시설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치료감호시설에 증상이 경미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그 만큼 치료가 필요한 다른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 기회가 적어지므로 이러한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²³⁾

참고로 영국의 경우, 별도의 치료감호소는 없지만, 정신장애 범죄자를 재범 위험도에 따라 고도, 중도, 저도로 구분하여 보안시설에 수용하고 있다.²⁴⁾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으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정신장애 범죄자의 장애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정신장애 범죄자를 구분하여 처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지역사회 정신병원 및 사립정신병원을 사법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신장애 범죄자와 일반적인 정신장애 환자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치료감호시설) 제1항 각호에 따라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법무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법무병원에서는 피치료자와 다른 환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피치료감호 대상자를 지정법무병원에 수용하여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5.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3조의3(정신건강검진)에 따른 정신건강검진 방법은 ① 질문에 대한 응답 ② 정서반응의 변화 ③ 태도관찰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진단 실시도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신 검사를 위해 관계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23 안성훈,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학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63-167면.

24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7/06/Mental-health-in-prisons.pdf>
류은숙, 앞의 논문, 108면.

앞서 살펴본, 동 지침 제19조(이송대상 정신질환자) 제1항의 정신질환 수용자의 이송절차 및 자격 요건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정신과적 치료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 지침 제25조(환소자의 관리) 또한 집중치료기관으로 재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 수형자의 요건이 제한적이다. 환소 후 2개월 이상 보호기간이 경과한 자 중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자체 수용이 매우 곤란한 자로서 잔형기가 3개월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자격요건은 자칫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법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 입원제도를 그 주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호입원제도의 목적 이면에는 사회질서를 위한 치안유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호 입원제도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자 입원환자가 폭증하게 되었고, 보호 입원제도라는 미명하에 장기입원이 이루어져 법 제정의 본래적 목적인 치료와 사회복귀의 명분은 사라지고, 대신 범죄예방을 위한 격리와 감금이라는 치안의 논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²⁵⁾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논란이 되었던 보호 입원제도 등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신보건법」은 시행 20년 만인 2016년 5월 29일 전면 개정하게 되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법명을 바꾸어 2017년 5월 30일 전면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정신보건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강제 입원제도는 개정 법률 제43조 제1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로 개선되었고,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의 입원제도를 신설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강제 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25 2016년 5월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 및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신보건법 개정 요구가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이어졌고, 재판이 진행 중 2016년 5월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제2절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의 외국 사례

각 국가마다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에 대한 근거법령 및 처우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장애 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를 다르게 처우한다는 점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 범죄자들에 대해 강제입원치료와 구금중심의 시설내 처우와 같이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내 처우 및 사회내 처우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내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사회내에서 정신장애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정신장애 치료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내 처우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다.

1. 미국의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미국의 교정행정은 연방 교정행정과 주 단위의 교정행정으로 구분되며, 교정시설 내 의료제도도 연방과 주 단위로 구분된다. 연방 교정의 경우 미국 전역을 6개로 구분하여 지역 교정청을 두고 각 지역별로 1개의 의료교도소를 두며, 해당 지역 내 교정시설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중치료를 위해 의료교도소로 이송하여 치료 관리한다. 각 주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와 같이 교정 행정규모가 큰 주에는 의료교도소를 두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주에서는 전문 의료교도소를 설치하지 않으며, 각 교정시설 내의 의료전문 직원이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교정 시설 주변의 지역사회 내 외부병원을 이용하여 의료처우를 실시하는 상황이다.²⁶⁾

또한 미국은 형사사법시스템 안에 정신장애 범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나갈 때까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대안적 처우를 각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Munetz와 Griffin(2006)은 <표12>와 같이 순차적 차단모델(Sequential Intercept Model)을 개발한 뒤,



26 Heilbrun, K., DeMatteo, D., Yasuhara, K., Brooks-Holiday, S., Shah, S., King, C. et al., "Community-based alternatives for justice involved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Review of the relevant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9, 2012, 351-419면.

정신장애 범죄자들에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대안적 처우들을 차단지점에 따라 개념화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정신건강법원 및 약물법원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특수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²⁷⁾

<표12> 순차적 차단 모델

	차단지점	대안적 처우
차단 1	지역사회 내 응급서비스 및 법집행기관	위기개입팀
차단 2	초기구금 및 초기 심리	적합한 개입과 특별한 보호관찰
차단 3	구치소 및 법원	지역사회 처우 및 문제해결법원
차단 4	구치소 및 교도소	사회복귀지원
차단 5	지역사회	보호관찰 및 가석방

출처 : CMHS National GAINS Center, 2009 참조²⁸⁾

2. 영국의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영국은 2007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장애를 ‘정신장애 및 무능력의 일체’라고 정의하여 정신장애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확대하였다. 영국은 정신장애의 심각성 정도 및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크게 세 등급(고도보안시설, 중도보안시설, 저도보안시설)으로 구분하여 처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전문가들로 구축된 팀이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정신장애의 정도가 낮은 단계인 저도보안시설의 경우는 각 주 정신병원이나 사립정신병원을 사법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뒤 일반적인 정신장애 환자와 정신장애 범죄자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경찰의 수사 단계, 재판의 전(前)단계 및 재판 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처우가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제도로써 ‘모든 단계의 다이버전 모델(All-Stage Diversion Model)’이 있다. ‘모든 단계의 다이버전 모델’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건강문제 및 범죄의 재범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점검하여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취약한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각 지역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지받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적정 시기에 연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정신장애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된다.²⁹⁾

27 Munetz, M., & Griffin, P., "Use of the sequential intercept model as an approach to de-criminalization of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2006, 57, 544-549면.
 28 "Sequential intercepts for developing CJ-MH partnerships". from <http://www.nami.org/Template.cfm?Section=cit2&template=/Content 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101341>(검색일자: 2014년 3월 9일 재인용)
 29 류은숙, 앞의 논문, 111-116면.



3. 독일의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독일 형법 제63조는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범죄행위자의 위 상태로 인해 위법 행위가 상당히 예견되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점이 행위자와 행위를 종합하여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 범죄행위자를 정신병원에 수용하도록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인을 정신병원에 수용하도록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금단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독일 형법 제64조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 또는 치료가능성이 수용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가능성이 없는 만성적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신병원에 수용명령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는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범하고 향후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예상되는 정신장애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³⁰⁾

독일의 형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서는 “정신병원의 수용 또는 금단시설의 수용은 연방법(聯邦法)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주법(州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독일의 각 주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인을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안처분집행법, 정신질환자법 등과 같은 다양한 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치료감호의 집행방법은 주별로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법정신병원에 수용한 뒤 치료하고 보호하는 시설 내 처우이며, 두 번째는 외부의 중간처우시설에서 치료 및 보호를 하는 사회 내 처우이다.³¹⁾

4. 일본의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일본의 교정 의료 체계는 3단계로 나뉘는데, 제1단계는 일반교정시설에서, 제2단계는 6개의 의료중점형무소에서, 제3단계는 4개의 의료전문형무소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전문

30 이근호, “독일의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치료제도 연구”, 국외훈련 검사 연구 논문집 제29집, 2014, 205면; 안성훈·정진경,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76면.

31 이근호, 앞의 논문, 2014, 210-211면; 안성훈·정진경, 앞의 논문, 2018, 179면.

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1단계 의료기관인 일반교정시설은 교정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에 따라 보통 1~3명의 의사가 수용자의 경미한 질병과 단기질병에 대한 진료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장기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일본 교정관구별로 지정된 6개의 의료중점형무소와 4개의 의료전문형무소에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다.³²⁾

일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적정 치료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 및 효과적 처우를 위하여 2003년에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5년 「의료관찰법」 이전에는 살인, 방화와 같은 중대 범죄를 일으킨 정신장애 범죄인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들의 처우는 형사사법체계가 아닌 정신보건의료체계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정신보건의료체계에서는 조치입원과 같은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로 석방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가 없는 실정이었다. 2005년 제정된 「의료관찰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내(지정의료기관)의 정신질환 치료뿐 아니라 시설의 퇴원 후에도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³³⁾

제3장 정신질환 수용자의 실태 조사

제1절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남부구치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대구교도소, 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수용자 269명의 응답 질문지 중 한 가지 답으로만 표기한 불성실한 응답 질문지 3부를 제외하고, 총 266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수용 생활 중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 유형(수용시설과 관련된 문제점, 접견 및 서신 등과 관련된 문제점, 의료와 관련된 문제점 등); 수용생활 중 해결 방법(교정 직원이나 외부에 알림); 수용 생활 중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치료받은 유형(의사와 같은 의료적 진료, 약물치료, 교육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입소 전 직업 여부, 가족관계); 복역기간, 교정시설 입소 횟수; 대뇌 손

32 Toshiaki, N.,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psychiatric services in Japanese prisons”, Journal of Nippon Medical School, 76(4), 2009, 182-187면.

33 안성훈·정진경, 앞의 논문, 2018, 185-186면.

상 여부와 유형(간질, 치매, 뇌성마비, 뇌경색, 뇌졸중 등); 정신장애 여부와 유형(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교정시설 수용 중 자살 또는 자해 시도 여부; 치료감호 경험 여부; 징벌 및 징벌 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교정시설 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된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2절 연구 대상

<표13>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용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성 수용자가 총 254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수용자의 약 99.2%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수용자 수는 총 2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0.8%를 차지하였다. 수용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해당되는 수용자가 257명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120명, 46.7%) 연령 분포를 보였으며, 그 외, 20대에서 30대 수용자, 60대 이상 수용자 순서로 연령대가 분포하였다.

<표1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성	254	99.2
	여성	2	0.8
	합계	256	100.0
연령	10대	1	0.4
	20대~30대	71	27.6
	40대~50대	120	46.7
	60대 이상	65	25.3
	합계	257	100.0
최종 학력	무학	1	0.4
	초졸	22	8.7
	중졸	46	18.1
	고졸	129	50.8
	대졸	56	22.0
	합계	254	100.0
혼인 상태	미혼	101	40.2
	동거	25	10.0
	기혼(초혼)	65	25.9
	재혼이상	9	3.6
	별거/이혼/사별	51	20.3
	합계	251	100.0

구분	내용	빈도수(명)	구성 비율(%)
입소 전 직업	회사원	45	18.3
	자영업	89	36.2
	종업원	12	4.9
	부정기알바	35	14.2
	무직	65	26.4
	합계	246	100.0
복역 기간	6월 미만	21	8.6
	6월 ~ 1년	54	22.2
	1년 ~ 2년	61	25.1
	2년 ~ 5년	70	28.8
	5년 이상	37	15.2
	합계	243	100.0
입소 횟수	1회	110	45.1
	2회	50	20.5
	3회	35	14.3
	4회	17	7.0
	5회 이상	32	13.1
	합계	244	100.0
죄명(대검찰청·형법에 따른 분류)	재산범죄	84	36.8
	강력범죄(홍약)	69	30.3
	강력범죄(폭력)	26	11.4
	위조범죄	2	0.9
	풍속범죄	2	0.9
	과실범죄	3	1.3
	기타형법범죄	42	18.4
	합계	228	100.0

학력별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수용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 수용자는 129명으로 전체 대상인원의 5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대학교 졸업 수용자(56명, 22.0%), 중학교 졸업 수용자(46명, 18.1%), 무학 또는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수용자(23명, 9.1%) 순서로 나타난다.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혼의 수용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1명, 40.2%),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수용자(65명, 25.9%), 결혼 경험이 있는 수용자(51명, 20.3%) 순서로 확인되었다.

직업별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교정시설 입소 전 자영업자였던 수용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89명, 36.2%), 무직(65명, 26.4%), 회사원(45명, 18.3%), 비정규직 아

르바이트(35명, 14.2%), 종업원(12명, 4.9%)의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복역기간에서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수용자 중 28.8%에 해당하는 약 70명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교정시설에 복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년 이상 2년 미만(61명, 25.1%), 6개월 이상 1년 미만(54명, 22.2%), 5년 이상(37명, 15.2%), 6개월 미만(21명, 8.6%) 복역해야 하는 수용자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입소 횟수와 관련해서,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한 수용자가 약 110명(45.1%)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용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 외, 교정시설에 2번 입소(50명, 20.5%), 교정시설에 3번 입소(35명, 14.3%),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입소(32명, 13.1%), 교정시설에 4번 입소(17명, 7.0%)한 수용자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죄명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수용자가 약 84명(3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범죄유형으로는 흉악 강력범죄(69명, 30.3%), 형법범죄(42명, 18.4%), 폭력 강력범죄(26명, 11.4%), 과실범죄(3명, 1.3%), 풍속범죄와 위조범죄(각, 2명, 0.9%)의 순서로 나타난다.

제3절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구대상을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정신장애 범죄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면 정신장애 범죄자만의 특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정신장애 범죄자 중에서 중증 정신장애 범죄자의 경우, 이들의 응답을 도출하기가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 타당성 등도 의심될 여지가 크다. 반면 증상이 경미한 정신장애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역시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수용자와 정신장애가 없는 수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검사 및 질적 연구 등을 병행하고, 직원에 대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태도, 인식과 같은 연구를 병행하여 본 연구를 더욱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대상 가운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는 전체의 약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가 없는 수용자는 약 58.0%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있는 수용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약 24.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순서로는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와 정신장애가 없는 범죄자 간의 비교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연구였기에, 본인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두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와 정신장애가 없는 범죄자 두 집단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 분석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사뿐 아니라 질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주교도소 등 총 6개의 교정시설 수용자 총 269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명의 설문 조사지를 제외한 총 266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자 중 자신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약 42.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상당수가 정신장애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약 45%가 수용생활 중 불편한 점이 의료적 문제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수용동 시설이 불편하다는 22.2%의 답변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서 의료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질의한 의료적 문제는 통상적인 의료처우 뿐 아니라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정신과적 의료 문제를 포함한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 정신과 전문의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정신장애 수용자의 정신과적 의료처우(약 및 주사 처방)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에서는 정신과 의료전문 교도소의 신설 또는 각 지방교정청별 지정법무병원의 선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교정기관에서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자살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아주 그렇다가 6.5%, 매우 그렇다는 6.2%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12.7%가 매우 높은 자살생각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약 8.1%가 1회 이상 자살시도의 전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회 이상의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응답도 약 3.5%에 해당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자살 시도 전력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용생활 중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1회 이상 시도하였다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약 14.2%를 차지하였고,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시도를 5회 이상 하였다는 대상자가 응답자 전체 인원의 약 2.4%를 차지하는 등 연구 대상자의 상당수가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의 전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가 전체 대상자의 약 42.0%를 차지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정신장애는 우울증으로서 약 2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높은 순으로는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이 약 16.4%를 차지하는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장애가 연구 대상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연구 대상자의 높은 자살생각 및 자살 시도 전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가 있는 수용자 중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 있는 수용자는 자살과 관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교정시설에서 정신적 질환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약 73.0%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정신적 질환과 관련하여 의료과 진료(의사)를 받았는지의 질의에서는 약 58.1%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정신적 질환의 경우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가의 항목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라고 응답한 수치가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수용자들이 정신적 질환의 치료에서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의의 도움을 실제 원하지만 교정현장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그렇지 못함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수용자들의 수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전문병원의 추가 설립과 정신간호학, 정신보건 임상심리학 및 정신보건사회복지학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 등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치료감호소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관련 치료 및 프로그램을 치료감호소에서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11.4%를 차지하였다. 또한 치료감호소가 아닌 곳 중 정신장애 치료를 받고 싶은 기관으로는 외부 정신건강병원이 3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출소 후 정신장애 관련 치료를 받고 싶은 기관이 어딘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신건강병원이 37.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정신장애 치료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치료감호소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고, 외부 정신건강병원과 같은 곳을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정시설 내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만족감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다이버전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선기관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통합적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정신장애 수용자들은 정서적, 인지적인 결함, 빈약한 생존기술 및 사회기술, 심리적 외상, 성격장애, 약물오남용 등 복합적인 특성들로 인해 통상적으로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문제해결능력도 부족하며 일반인에 비해 분노와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는 의료적 치료, 심리적 치료, 약물 및 행동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치료적 개입과 환경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나, 교정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치료적으로 개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앞서 2019년 범죄백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사회적 현상으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2019년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안00의 방화 및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도 조현병으로 확인되면서 정신장애 범죄자의 강력범죄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강력범죄화의 증가는 결국 교정시설 내에서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장애를 지닌 범죄자의 수가 증가함과 깊은 연관이 되며,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대표적 시설내 처우로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표10>의 치료감호자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당시의 치료감호 수용인원은 824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038명으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치로 간호자의 증가추세는 결국 국립법무병원 병동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의 업무과로와 같은 문제로 불거지는 실정이다. 실제 2019년 4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총 15명이지만 실 근무인원은 총 7명이었다. 정신장애 수용자가 2019년 기준 1,091명임을 감안할 때, 의사 1인당 156명(법정 기준인원 60명)의 정신장애 수용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립법무병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보다 많은 지정병원의 선정과 전문의를 총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다루었듯이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의 과밀화는 단순히 국립법무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교도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치료중점교도소인 진주교도소의 경우도 정신장애 범죄자의 수가 2010년에는 1,544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459명으로 대폭 급증하여 과밀화가 심하였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밀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 중 5곳을 지정하여 정신장애 범죄자를 수용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국립부곡병원 한 곳에서만 총 40명의 정신장애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신장애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치료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단순히 수용공간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안전, 위생 및 교정교화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신장애 범죄자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안기는 결과가 되므로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신장애 치료시설의 과밀화 외에도 정신장애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 역시 매우 시급함은 앞서 언급하였다. 교정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신간호학, 정신보건임상심리학 및 정신보건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전문 인력을 적



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정신장애 수용자의 치료 외에도 형사사법기관의 많은 정신감정 요청이 있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열악한 보수 및 높은 이직률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직 이후 새로운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각 교정청별로 지정법무병원을 지정하여, 전국의 정신장애 수용자를 각 교정청별로 분산하여 치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지방교정청에 지정법무병원 등을 지정하면, 정신장애 범죄자 수용의 과밀화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사례 중 독일의 경우, 사법 외래치료센터 및 병원치료 명령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치료감호가 필요 없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탈시설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국도 ‘지역사회 치료명령’을 실시함으로써 치료감호가 필요 없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신건강법원’ 또는 ‘약물법원’과 같이 특화된 법원을 도입하여 치료감호가 필요 없는 정신장애범죄자를 사회내에서 치료하도록 처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서 언급한 치료감호소의 과밀화 및 인력부족과 같은 현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감호가 필요 없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내처우와 같은 외국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 중 경제적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다른 정신장애가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가운데 약 5만 4,000여 명이 매년 퇴원하지만, 이들 중 약 2만 명 정도는 다시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 정신과 진료를 사실상 중단한다고 한다. 즉 정신장애 환자 3명 중 1명은 정신병원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정신장애 범죄자가 출소 후 정신과적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과 상관이 높은 조사 결과이므로 법무부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정신보건법」에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4건, 2018년은 총 13건에 불과하였다. 2017년 5월 이전에는 본인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절차가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이 없었기에 통계자료 조차 없다. 이처럼 외래치료명령제도가 비록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 제도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도입함으로써 정신장애 범

죄자를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 및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범죄자가 자해의 징후가 있거나 반복적인 폭행 및 욕설과 같은 공격 성향이 지속되어 긴박하고 위험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는 ‘응급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 지침에는 ‘정신건강 응급 매뉴얼’에 따라 경찰청, 소방청, 건강복지센터 등이 서로 협력하여 정신장애자를 응급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근거하여,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응급입원’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신장애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때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정신장애 범죄자의 처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31명의 정신장애 수용자가 출소(가석방) 후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장애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연계 시스템이 더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교정, 경찰, 소방,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공책임제도의 도입과 지역 네트워크의 실질적 강화가 교정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국내 단행본]

- 경찰청, 2019년 경찰통계연보, 제63호, 2020.
- 권준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학지사, 2019.
- 김혜련, 신혜섭, 정신건강론, 학지사, 2001.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2020.
- 법무부 교정본부, 정신질환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9.
- 법무부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 법무부 형사법개정자료(IV), 1992.
-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실태 역학조사, 2016.
- 신동운, 형법총론(제10판), 법문사, 2019.
- 안병은,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한길사, 2020.
- 오영근, 형법총론(5판), 서울: 박영사, 2019.
- 정영일, 형법강의 총론, 서울: 학림, 2013.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 정신보건복지법상해, 정신보건복지연구회, 2002.
- 코넬리우스 카토나·메리 로버트슨, 송후림 번역, 한눈에 알 수 있는 정신의학, Katona, C. & Robertson, M. (2008), Psychiatry at a Glance-Third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Ltd, 2008.

[국내 학술지 및 논문]

- 강경래,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3(1), 2010.
- 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우울, 불안, 수치심, 자살사고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http://www.nhis.or.kr/bbs7/boards/B0039/271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김경옥, 김천중, 서상일, 김남열, 김근우, “불안장애에 대한 침치료 임상 연구의 체계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8(3), 2017.
- 김경화, “정신장애 범죄자의 교정처우”, 교정복지연구, 35, 2014.
- 김기두, 정신장애성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 23(2), 1982.
- 김명철, 이승우, 이윤호, “정신장애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평가”, 교정연구, (69), 2015.
- 김문근, 하경희,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 전달 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사회복지정책, 43(30), 2016.
- 김성규, “책임능력판단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 내용”, 법조 7월호, 2006.
- 김용호, “자살위험군 수용자의 심리유형 분석 및 상담처우기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정만, “형법상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행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진환,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남윤영, 전우택, “우울증의 신경생물학적인 최신지견”, KSBMB News(생화학분자생물학회 소식지), 22(5), 2017.
- 노용우,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형사법연구, (15), 한국형사법학회, 2001.
- 류은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 류인호, “목회자의 인격장애와 내적치유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0.
- 박미숙, “심신장애 판단과 감정”, 형사판례연구, 19, 2011.
- 박상식,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7.
- 박종익, 정한용, 남윤영, 이해국, 나경세, 유빛나, “범법정신질환자 치료기관 다각화에 관한 연구”, 서울: 법무부, 2012.
- 박정혜, 김춘경, “심상치료가 만성 조현병 입원환자의 증상 완화 및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 정서·행동장애연구, 32(3), 2012.
- 박혜경,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형성 과정”, 과학기술학연구, 12(2), 2012.
 - 성경숙,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2, 2010.
 - 손외철,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신관우, “심신장애인 판단에 대한 검토(2018년 형사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4, 2019.
 - 신관우,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신관우·정세중, “정신분열증과 형사책임”, 한국범죄심리연구, 6(2), 2010.
 - 신동일, “심신장애자 판정의 문제점과 비교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소식, (29), 2005.
 - 엄지, “조현병환자의 비장애 성인 형제자매가 인식한 원가족과의 관계가 돌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여환홍, 백용매,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29(4), 2010.
 - 안성훈,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학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안성훈·정진경,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학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유지순, 정영진, “분노 조절 장애의 방화에 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10), 2015.
 - 이근호, “독일의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치료제도 연구”, 국외훈련 검사 연구 논문집, 제29집, 2014.
 - 이선혜, 서진환, “한국 성인의 정신건강역량: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 2015.
 -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2000.
 - 이인영,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홍익법학, 11(2), 2010.
 - 이철호, “교도소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분노조절프로그램 효과: 자아존중감, 상태특성 분노, 강인성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규원, 박강우,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5.
 - 장철영,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 조현병 환자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5권 제1호, 2020.
 - 정상혁,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 2005.
 - 정성국, 이효정, 임형수, 강현욱, “살인사건 중 존속살해와 정신분열의 연관성 분석”, 한국법과학지, 10, 2009.
 - 정영기, “개원의를 위한 모범처방전 : 공황장애”, Korean Journal of Medicine(구 대한내과학회지), 61(1), 2001.
 - 정재준, “심신상실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시도(한미 비교를 통한 맥나튼 룰 도입 가능성 제고)”, 비교형사법연구, 13(2), 2011.

- 정필자, “정신장애범죄자의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병구,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능력 중심으로)”,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0.
- 조철옥,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3: 2008.
- 최영신, “교정처우의 「피구금지처치기준규칙」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9권 3호, 2015.
- 최이문, 이혜랑,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 한국심리학회지: 법, 9(1), 2018.
- 최재호, 조광현, 정상근, “원자(原告) : 한국인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에서 Apolipoprotein E 유전자의 다형성”, 전복의대논문집, 27(2), 2003.
- 하정희, 안성희,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2008.
- 한송이, “해리성 정체성장애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소설 ‘빌리밀리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한정환,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형사법연구, 15, 2001.
- 허경미, “교도소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관련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경찰학 논총, 제12권 제2호, 2017.
- 허경미, “미국 전자감시제의 효과성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교정연구, 59, 2013.
- 허경미, “범죄자의 폭력심리와 교정시설의 폭력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6, 2010.
- 허경미,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략 연구”, 교정연구, 26(2), 2016.

[외국 단행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 Seoul: Hakjisa, 2015.
- Blumenthal, S. & Lavender, T.,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A Critical Aid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Risk,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 2004.
- Centr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Placement and Treatment of Mentally Ill Offenders: Legislation and Practice in EU Member States. Mannheim: Centr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2005.
- Griffin, P. A., & DeMatteo, D., Mental Health Courts: Cautious Optimism. Santa Barbara, CA: Praeger Publishing, 2009.
- Kullman, Hans J., Entziehung der Freiheit von Geisteskranken und Suchtkranken. München : Goldmann, 1971.
- James, D. J., & Glaze, L. F., Mental Health Problems of Prison and Jail Inmates.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6.

- Jeffrey Wood, *Getting Help: The Complete and Authoritative Guide to Self-Assessment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Problems*.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07.
- Sainsbury Centre, *In the Dark: The Mental Health Implications of Imprisonment for Public Protection*. London: Sainsbury Centre Mental Health, 2008.
- Shapiro, S., *The Boss and Organization Stres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99.

[외국 학술지 및 논문]

- Bonta, J., Law, M., & Hanson, K.,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998.
- Borchard, B., Gnoth, A., & Schulz, W.,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in Sex Offenders Imprisoned in Forensic-Psychiatric Hospitals-SKID-II-and PCL-R-Results in Patients with Impulse Control Disorder and Paraphilia", *Psychiatric Prax*, 30(3), 2003.
- Boyd JH.,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the Treatment of Panic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986.
- Blaauw, E., Roesch, R., & Kerkhof, A., "Mental Disorders in European Prison Systems: Arrangements for Mentally Disordered Prisoners in the Prison Systems of 13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3(5-6), 2000.
- Brennan, P. A., Mednick, S. A., & Hodgins, S., "Major Mental Disorders and Criminal Violence in a Danish Birth Coh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5), 2000.
- Chantry, K., & Craig, P. J., "Psychologically Screening of Sexually Violent Offenders with the MCM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 1994.
- Drake, R. E., & Cotton, P. 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e in Chronic Schizophrenia",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8(5), 1986.
- Elbogen, E. B., & Johnson, S. C., "The Intricate link between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6(2), 2009.
- Fazel, S., Gulati, G., Linsell, L., Geddes, J. R., & Grann, M., "Schizophrenia and Violenc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Med*, 6(8), 2009.
- Grann, M., & Fazel, S., "Substance Misuse and Violent Crime: Swedish population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22, 2004.
- Heilbrun, K., DeMatteo, D., Yasuhara, K., Brooks-Holiday, S., Shah, S., King, C. et al., "Community-Based Alternatives for Justice Involved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Review of the Relevant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9, 2012.
- Henn, F. A., Herjanic, M., & Vanderpearl, R. H., "Forensic Psychiatry: Diagnosis and Criminal

- Responsibi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76.
- Hodgins, S., Cree, A., Alderton, J., & Mark, T., "From Conduct Disorder to Severe Mental Illness: Associations with Aggressive Behaviour, Crime and Victimization", *Psychological Medicine*, 38(7), 2008.
- Link, B & Steuve, A., "Evidence Bearing on Mental Illness As a Possible Cause of Violent Behavior", *Epidemiology Reviews*, 17, 1995, 172-181.
- Monahan, J., "Mental Disorder and Violent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7, 1992.
- Showalter, C., R., "Treatment of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5), 2000.
- Siris, S. G., "Suicide and Schizophrenia",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15(2), 2001.
- Tiihonen, J., Isohanni, M. R., Koiranen, M., & Moring, J., "Specific Major Mental Disorders and Criminality: A 26-year Prospective Study of the 1966 Northern Finland Birth Cohor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997.
- Toshiaki, N.,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Psychiatric Services in Japanese Prisons", *Journal of Nippon Medical School*, 76(4), 2009.
- 岡田行雄, "イツにおける刑事責任能力と触法精神障碍者の處遇", *法律時報(74卷 2号)*, 日本評論社, 2002.



21세기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중심의 교정모형 탐색

차명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I. 서론

II. 기존 교정모형의 한계

1. 범죄 원인론의 한계
2. 이성론의 한계
3. 교정의 독자적 학문 체제의 제한점
4. 심리 건강 서비스로서의 제한
5. 인간에 관한 관심의 부족

III. 인간중심의 교정 패러다임

1. 인간중심의 교정
2. 인간중심 교정의 의미
3. 발현적 및 경험 중심의 교정
4.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교정
5. 인간중심 교정의 조건

IV. 나가는 말

국문 요약

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고, 교정의 의미와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관한 철학적 담론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교정의 양태도 변화되었는데 최근에는 심리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범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을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의 이해를 토대로 살펴보면 과거 교정의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간중심 교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며 실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간중심 교정은 범죄가 아닌 ‘그’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쏟고 범죄자를 교정의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주체로 인식하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력한다. 즉, 범죄자는 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 스스로 법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그가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며 결과 이기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주제어 : 교정, 범죄학, 인간중심상담, 인간중심 교정상담 모형

I. 서론

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중세시대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근대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체계의 형사사법의 체제로부터 시작되어(유정우, 2018), 구금과 재사회화에 목적을 두고 발전해 왔고(허주욱, 2011), 최근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고 새로운 교정의 패러다임을 창출해가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교정의 의미와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대한 담론이었다(Polaschek, Day & Hollin, 2019). 가장 오래된 담론은 범죄행위자가 악마 혹은 사악한 영의 영향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는 관점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Beccaria(1738~1794) 등의 공리철학자들이 범죄의 원인을 자유의지와 억제이론으로 설명하면서(Ronald L. Akers 외, 1999; 황성

현, 2012)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범죄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실증주의적 관점이 도입되었다(Ronald L. Akers 외, 1999).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고전학파와 실증주의 학파의 전제를 기저에 두거나 재평가함으로써 범죄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정립하게 되었다(김병양, 1974).

이러한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관한 담론의 변화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처벌을 논하고 실행해야 하는 사법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교정의 양태에 변화를 주었다. 교정의 양태는 크게 복수적(응보) 단계, 위학적 단계를 거쳐 박애주의 사상에 따라 교정적·개선적 단계, 과학적 처우 단계, 그리고 교정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범죄자가 복귀해야 할 곳인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에 두는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로 변화해왔다(이윤호, 2007).

최근에는 교정의 새로운 시도로 심리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점이 도입되고 있다. 형벌적 차원에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교화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전제했던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교정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심리적 접근은 범죄자 특성을 참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처우 개선,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재범 위험 정도 평가, 교도관들의 직무 특성 분석, 교도관과 수용자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전문적인 개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교정의 철학적 배경과 발달사,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의 이해는 한국의 교정에 대한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교정이 범죄학이나 사법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왔기에 독립적이고 고유한 속성으로써의 교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정은 응보적, 치료적, 회복적 사법이라는 법의 인식에 따라서 결정됐기에 교정이 지니는 독자적인 학문적 틀이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교정이 사법 체계의 일부일지라도 교정의 독자적 기능과 목적이 제한되는 경우 교정의 효과성이나 효능을 담보하기 어렵고, 교정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이론적 특성을 정립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교정학의 학문적 고유성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둘째, 교정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바탕으로 한 근대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의 여부, 인간의 의식 동일성의 여부, 범죄행위자와 비 행위자 간의 범죄 발생 차이의 원인, 범죄가 발생 여부가 처벌의 두려움과 도덕적 추론 능력인지에 대한 관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범죄와 교정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의 한계성과 이성을 넘어서 인간을 이해할 새로운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만든다.

셋째, 교정은 협의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교도소 안의 교정에 국한되고 있다. 최근 교정의 흐름은 교도소 내 뿐만 아니라 교도소 밖에서의 교정 논의로 발달하고 있다. 교정이 교도소 내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와의 연관성과 사회로 되돌아왔을 때 교정의 개방적 접근을 제한시킨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둔 교정과 함께 범죄자가 한 사람으로 이해됨으로써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교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교정연구는 단순히 범죄와 재범률에 따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로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실제로 범죄자의 인식과 삶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이에 한 사람으로서의 범죄자 삶의 이야기를 통한 학문적 접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제 범죄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적절한 행형이 완전한 교정의 목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 교정의 목적이 범죄 감소에 있지만, 동시에 범죄자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면 한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정에서는 심리학적 접근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그 틀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교정의 독자적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처벌, 그리고 선도라는 관점에 인간 그 자체의 요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정은 다양한 사회학적 혹은 사법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을 대상으로 교정 행위를 통해 개인의 심리 세계나 일상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탐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 교정과 인간중심 교정 상담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인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 즉 그의 범죄에 대한 인식, 처벌에 대한 자기반성, 삶을 살아가는 의미 등을 통한 내적 책임감의 고취 및 현실적 자각 등이 드러나는 관점에 관한 탐색을 해 보려 한다.

II. 기존 교정모형의 한계

1. 범죄 원인론의 한계

일반적으로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수많은 범죄학자가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이론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지만, 인간의 삶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이윤호, 2014).

범죄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은 생물학적, 심리적인 개인의 속성에서 원인을 찾거나(김기원, 2010) 이는 사회화 과정과 사회학습 및 사회 통제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밝혀 내려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이윤호, 2007). 이와 같은 연구는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근거로 하였으나 범죄자의 측면에서 범죄란 무엇이며, 범죄에 따른 책임 의식은 무엇인지, 그가 삶에서 범죄를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등에 관한 관심은 없었다. 기존의 범죄 원인론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과거를 교정하거나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수정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며 이런 접근법은 범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이유와 동기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인간의 욕구를 지나치게 사회학적 혹은 법적으로 한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과 통찰을 얻는다고 해도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기에는 제한성이 있다.

2. 이성론의 한계

범죄 교정에 대한 다수의 이론은 범죄는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되므로 개인이 이성적으로 범죄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면 범죄나 재범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



러나 사회적 진로 혹은 윤리로서의 이성적 발달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기초로서의 이성적 작용은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이성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간적 성장은 이성적 발달을 포함하여 감성적 역량, 자기 삶에 대한 이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한 수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전인적 접근이며, 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3. 교정의 독자적 학문 체제의 제한점

교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되어왔지만 교정의 독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정에서 범죄자의 다양한 심리 내적 혹은 외적 요인들에 관한 관심은 있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존재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정의 독특한 학문적 체계를 형성하는 것에 제한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범죄와 사법 체계와 행형이 연계되어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범의 고리를 끊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교정학은 학문적 틀과 실제적 관점에는 교정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요구에 맞는 처벌을 집행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벗어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백철(2003)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정학이 법학이라는 왜곡된 등식이 해체되고, 일제, 냉전, 군사의 잔재로부터 해방되어 개혁성, 다양성, 실천성에 입각한 담론이 창출되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역사적 삶 속에서 억제되고 배제되었던 또 다른 인간의 삶을 찾아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는 작업이 교도소학을 교정학으로, 교정학을 또 다른 대치된 담론학문으로 정착시켜가는 길이다. 이는 무한한 예술적, 문학적 상상력이 학문적 담론에 그리고 실천적 담론에 이입되어 배양되고 창출되는 개방형, 개혁성 풍토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4. 심리 건강 서비스로서의 제한

교정심리학은 범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범죄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관한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교정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관심이 높다. 즉, 교정심리학은 보안과 교화라는 측면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교정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개인의 행동을 전적으로 개인 내에 소재시키고 무의식적 수준에서 행동을 다룸으로 효과 검증이 어렵고 제한된 효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에 이어진 학습 이론에 따른 교정의 다양한 전략과 방법 또한 지속적인 범죄에 대한 수많은 요인 가운데 몇 가지 요소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범죄 행동은 서로 다른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드러나므로 교정 또한 복잡한 개입 반응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교정심리학은 범죄자의 재범 위험 평가, 범죄자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직무 분석, 수용자와 교도관의 상호작용 등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조은경, 2005).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교정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지향하기보다는 행동 교정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은 범죄자의 인간적 가치 향상과 선한 삶에 대한 의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삶의 경향성을 실현하는 것 등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자 개인의 심리 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5. 인간에 관한 관심의 부족

교정 현장에서 수형자의 범죄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연구할 필요성에 관한 주장은 교정심리학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명숙, 한영선, 손외철(2017)이 《교정의 심리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실천학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개인적 삶의 역사를 살아내는 사람’,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범죄인’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제안은 박연규(2016)에 의한 수형자 집단의 주체성 및 자율성의 확보를 제공하려는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그는 주체의 코드화 금지, 재소자의 총체적 몸체에 관한 관심,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방법의 강



구 등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재소자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범죄만큼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백철(2007) 또한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경직성과 기존에 제시된 범죄와 처벌에 관한 가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교정의 범죄론적 원인 관점과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효과적 개입전략을 찾는 것을 넘어서 인간에 관한 관심을 두고 한 인간으로서 삶과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III. 인간중심의 교정 패러다임

1. 인간중심의 교정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범죄자의 신체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고 범죄에 대한 단죄의 엄격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그’의 정신이나 삶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신체적 조건에 대한 제한이고, 그러한 환경에 놓였을 뿐이다.

그러나 교정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신체적 제약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그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끌어내고, 이것이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전문적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중심의 교정은 매우 중요한 합의를 지닌다. 인간중심이 교정은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삶의 실체와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도록 돕는 교정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정은 범죄사건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성적 반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의 삶의 관점과 지향성을 무엇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방향성을 두어야 한다. 수형자가 아닌 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과정과 같을 필요는 없다.

이런 점에서 교정은 실질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교정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는 인간에 대한 법치적 조력으로 바라본다. 이에 인간중심 교정모형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한 사람으로 보려 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인간은 사회적 역할이나 특정 명칭으로 구분되고, 유목화되며, 분절화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인간의 만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를 나타내는 특별한 명칭이나 행동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범죄자라는 호칭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게 만

드는 독특한 힘을 가진다. 인간은 그가 그다운 이름 이외의 어떤 용어로 만나서는 안 된다. 인간중심의 교정모형에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그에 대한 분류는 이차적이다. 인간은 병들었거나 틀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성장지향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병적인 것, 부적응적인 것,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쏟으려 한다. 인간중심의 교정모형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Rogers (1902~1987)의 인간관을 따른다. Rogers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났고 기본적으로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현화 경향성'은 타고난 것으로 개인이 가진 모든 생리적 및 심리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유기체인 자신을 유지하거나 성장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향성에 따라 인간은 자기답게 살아갈 때 가장 기능적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2. 인간중심 교정의 의미

인간중심의 교정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교정의 목적과 관심이 범죄 사건이나 범죄와 그 원인의 교정이 아니라 한 사람에 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과거 교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법규를 지키는 건전한 시민으로 재사회화 등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교정에서 범죄자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주로 인권 주제로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주제들로 인도주의, 공평주의, 법률주의, 과학주의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런 모든 노력은 범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정 및 교화를 시도하는 접근으로 범죄자를 대할 때, 대부분의 관심은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도울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범죄가 아닌 범죄자에 대한 교정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교정 실제에서는 범죄행위의 수정과 재발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한 개인이 발전시키고 성장해야 할 인간적 특성과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런 모든 논의에서 생략되고 그림자로 남아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 자체, 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미 등에 대한 직접적 논의이다.

이에 인간중심의 첫 번째 의미는 '그'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다. 인간중심 교정의 두 번째 의미는 범죄자를 교정의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력한다는 뜻이다. 즉, 범죄자는 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



자기 스스로 법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다. 흔히 범죄자는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책임감이 낮다는 식의 판단을 하였다. 그 결과 범죄자는 교육의 대상, 수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능동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은 이성적 교육, 통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사회적 및 개인적 윤리에 대한 학습 등이다. 이는 결국 지시, 명령, 훈계, 충고, 조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선 학습자가 후 학습자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교정 방법은 결국 후 학습자를 피동적으로 만들게 된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법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탐색하지 않는 한, 이는 외적인 법률 조치를 지속해서 강조하는 전략에 의존하게 된다. 외적 사법 체계의 무거움이 개인의 심리 내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역사적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위하시기에 행해졌던 처벌의 무게가 개인의 양심을 더 강화한다는 증거는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외적 조건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보다 한 개인이 능동적으로 사법 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스스로 그 판단을 따를 수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법과 체제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등을 주체적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중심 교정은 있는 그대로의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며,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쏟고, 그 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내담자가 자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중심의 세 번째 의미는 인간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존재가 된다. 중심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며 모든 결과가 되돌아 다시 오는 곳이다. 따라서 인간중심은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며 결과이기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3. 발현적 및 경험 중심의 교정

일반적으로 교정은 범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직선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원인을 수정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인과적 접근에서 원인은 모호하며,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미지수이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와 성장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발현적이며 경험적이다.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가운데 하나는 현상학적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현상학적 장에서 살아간다는 것, 즉 인간은 주관적 경험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으로 보기에 같은 사건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경험적 삶은 한 개인이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준거 체계와 같은 방향으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여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범죄자의 도덕성이나 범죄 인식 등은 그의 내적 준거 체계 내에서 주관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교정 서비스의 제공은 현상학적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성취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교정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원리나 개념 혹은 윤리적 및 법적 인식을 외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인가에 관한 관심보다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과 사회 그리고 법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그 경험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내적 준거 체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가 드러내 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인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교정

일반적으로 교정행위는 사회적 기준을 중심으로 두고 개인을 거기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회 중심성으로 인해 개인이 어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수동적 종속 자로 살아가도록 만든다. 즉, 행형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정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사법 시스템과 자기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탐색할 기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교정의 주 관심은 재소자와 그의 삶이 아니라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범죄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

이제는 교정의 방향을 개인의 관점에서 범죄와 교정 및 사법체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기 세계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이 바라보는 세상과의 관계성을 정립하도록 조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이 인식하는 법의 의미, 범죄의 규정, 자기 행동의 영향, 공동체의 이유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어떤 정의로움이 사회에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규명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탐색을 하는 것이고, 그가 보고 있는 세계를 자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5. 인간중심 교정의 조건

상기에서 제시한 인간중심의 교정을 실천하고 수행해 내기 위한 근본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는 앞으로 토론해 나가야 할 주제이지만 기초적인 것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적 만남의 실천

인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바라보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각자가 삶의 주체이고 상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석하고, 경험하는 존재이기에 그와 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위계를 이루거나 누가 누구를 지도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만나는 것에 대해 Martin Bube(1878-1965)는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지칭하였다. 반면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인간적 만남이 없는 관계를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사회적 역할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일과는 다르다. 교도관이 재소자를 만나는 것, 교사가 학생을 만나는 것,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것은 철수가 '창식'을 만나는 것, '영희'가 '미정'을 만나는 것, '희철'이 '환빈'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누구의 부모이고 자식이며, 어떤 삶을 꿈꾸는가에 관한 관심은 매우 낮다. 그는 병든 부위와 검사 결과 그리고 치료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교정이라는 행위가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이에 따른 행정 업무만으로 가능하다면 인간적 만남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범죄자에게서 범죄의 원인과 재범의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해서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렵다.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그 조건만 충족하면 면죄를 받는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행형의 원리만 남을 뿐이기 때문이다. 교정은 인간적 만남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와 기대 그리고 희망을 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간적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2) 경험의 존중과 자기 탐색

일반적인 교정 활동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배경이 무엇이며, 어떤 사건을 만났고,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주로 그의 삶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에 관심을 쏟는다. 이 경우, 이미 한 개인이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행위가 되어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교정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험 세계인 현상학적 장에서 살아간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한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겪는 사람의 내적 경험을 탐색해야 한다.

내적 경험을 중심으로 재소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내적 경험은 개인에게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며 그가 실제로 살아가고 자기 행위를 판단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이성적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 경험의 세계에서 인간적 만남을 통해 서로 이해할 때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정이란 특정 사건의 원인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비판적 태도

상기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정 방향과 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인간중심상담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Rogers(1961)는 개인의 성격 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의 공통 특징은 무비판적이라는 것이다.

무비판적인 태도는 타인의 경험에 대하여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다양한 기준과 법률적으로 옳은 행동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단을 중지하고 내담자의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에 관하여 판단 받지 않고 존중받겠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하여 당당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기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드러내게 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간다.

IV.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기존의 교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 교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간중심상담의 이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기실현 경향성,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수용하고 앞으로 진전하려는 태도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기존 교정의 패러다임은 범죄자를 사회적 결핍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의 원인은 올바름에 대한 무지, 양심의 결여, 이성의 부족, 이기심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범죄자에게 요구할 것은 그런 결핍된 비정상적 상태를 사회적 정상 상태로 환원하는 노력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은 한 개인이 자신의 내적 세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을 충분히 드러내어 실현하지 못하고 사회적 조건에 이끌리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적 조건으로 자기를 타인과 비교하고, 열등과 우월을 느끼며, 그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정은 한 개인에게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제공하여 수정하고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드러나게 하고, 그가 그답게 살아가도록 도울 때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내적 경험세계를 탐색하고, 자기 경험에 대한 개방을 강화하여 인간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자기실현 경향성을 실천하도록 돕는 분위기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가 중심이 되는 교정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정이다.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심원한 것이다. 그 까닭은 일차적으로 교정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과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불투명하다. 교정은 범죄의 교정, 개인의 심리 교정, 행형 과정의 인권 개선, 행형과 더불어 개인 삶의 교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범죄자의 결핍된 사회적 조건에 관한 관심 등을 총괄한다. 게다가 교정 전략이나 방법론은 개인 내적 요인, 개인 외적 요인, 범죄에 대한 시대적 관점 변화, 사법 시스템 및 행형의 방법론,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 정도, 국민의 법 감정,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포된다. 또한, 교정 서비스의 전달과 사회와의 연계 체제라는 문제도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수행하는 교정 인력의 역량과 교육, 교정 인력의 주된 업무 방향, 수형자와의 접촉 수준 등을 고려하면 교정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인간중심의 교정 패러다임은 아직 탐색적이다. 본 모형의 가장 낮은 수준은 교도관이 재소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일종의 면대면의 대화 과정에서 인간중심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일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활용은 교도소 전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및 행형 방법의 결정 과정에 재소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본 모형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실증적인 연구와 동시에 범죄에 관한 해석적 연구 과정이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정 과정에서 사람 자체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범죄의 측면에서 사람을 보는 것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스스로 범죄를 돌아보도록 관점을 변화시키며, 원인론적 관점이 아니라 실존론적이며 발현적 관점에서 교정을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주관적인 현상학적 장에서 살아감을 전제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드러내고 경험을 통한 인간적 가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강소영/장석현, (2012), '한국 범죄학의 학문적 성격과 발전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2호 pp. 9-44, 한국공안행정학회.
- 강선경/박인숙, (2005), '공격성감소와 사회재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제 27호, pp. 57-78, 한국교정학회.
- 공정식 외, (2010), '현대교정학, 내일을 여는 지식',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기원, (2011), '범죄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한명숙, (2017), '교정의 심리학', 서울: 솔과학.
- 김미경, (2003),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진실성'의 의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병양, (1974),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연구방향, 범죄유발원인으로서의 형벌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 김영식, (2016), '회복적 교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채영, (2010), '범죄학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류승현, (2013), '칼 로저스의 참만남 집단 상담의 목회적 적용 : 20-26세 청년들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과 석사학위 논문.
- 민건식, (1979), '형법', 서울: 박영사.
- 박광배, (2007),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사법 창간호, 사법발전재단, pp.138.
- 박기쁨, (2021), '사법정책연구원,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8권.
- 박기석, (2021), '형법상 특별예방과 교정상담', 법학논총, 41권 제2호, pp. 233-256, 전남대법학연구소.
- 박민정, (2021), '범죄의 주체화와 법의 사물화-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상식, (2008),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5, pp. 333-357.
- 박순용/김정희 (2019),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제-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이아교정포럼, 제6호, pp. 76-100.
- 박영규, (2011),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50호, pp. 7-31, 한국교정학회.
- 박은영, (2019), '교정수용자의 정신건강문제: 교정용 성격평가 질문지(PSI-PS), 자살위험성지표를 중심으로', 교정상담학연구, 4(2), pp. 5-26, 한국상담학회.
- 박지선, (2012), '문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제4권3호, pp. 107-124, 한국심리학회.

- 손병덕, (2010), '범죄청소년 재범예방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함의', 한국범죄학, 제4권 1호, pp. 3-30.
- 송광섭, (1992), '교정에 있어서 형벌의 본질', 법학연구 제 12권, pp. 109-13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만용, (2021), '법과 우정-자크 데리다의 철학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4호, 1권.
- 유정우, (2018), '교정학적 인간관에 따른 현대 교정정책 위기의 원인과 대안 : 평화민영교정론의 실천과 과제',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정보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유지황, (2016), '우정의 정치학 -토마스 아퀴나스와 자크 데리다 우정 이해 비교 분석', 철학탐구 제42권, pp. 1-36,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이경재, (2010), '롬브로소의 범죄학 사상에 대한 재조명',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pp. 129-155,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이무선, (2021),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교정의 과제', 교정담론 제15호 2권, pp. 127-146, 아시아교정포럼.
- 이용식, (201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고찰' 교정연구, 제66호, pp. 7-32, 한국교정학회.
- 이백철, (2002),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이백철, (2007), 'Nothing Works'와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재평가, 교정연구, 제36호, 한국교정학회.
- 이백철, (2008), '철학적 범죄학'의 정착을 위한 시론: 교정학의 지향점, 한국교정학회.
- 이백철/전석환, (2009), '철학적 범죄학'의 연구 범주와 그 탐구 지평에 대한 소고(小考),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백철, (2013), '200년 구금형제도의 재조명과 인본주의 형벌체계의 탐구: 평화교정학', 교정담론, 제7권 2호, pp. 1-32, 아시아교정포럼.
- 이수정, (2014), '최신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언담, (2015),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 교정연구 제69호, pp. 41-79, 한국교정학회.
- 이명숙/한영선/손외철, (2017), '교정의 심리학', 서울: 슬과학.
- 이영애, (2018), '교도소 수형자의 교정상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육연구, 제3권2호, pp. 47-71, 한국교정학회.
- 이영희, (1994),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철학적 함의', 상담과 심리치료한국심리학회.
- 이윤호, (2007), '범죄학', 서울: 박영사.
- 이윤호, (2014), '범죄 그 진실과 오해', 서울: 박영사.
- 이용주, 박근영, (2018), '수용자 인권에 대한 고찰', 교정상담학연구, 제5권 1호, pp. 11-131, 한국상담학회.
- 이은순, (1999), '공감훈련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상담연구 17(1), pp. 19-43.
- 이창규, (2018), '칼 로저스의 재발견 : 인간중심상담에 대한 목회신학적비평과 목회상담적 활용', 신학과 실천, 제61권, pp.265-299, 한국실천신학회.

- 이현림/김말선, (2017), '교정 상담', 서울: 학지사.
- 이병득, (1984),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형설출판사.
- 주소연/박병선, (2020),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 영국의 정신질환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교정상담학연구, 제5권 2호, pp. 33-67.
- 조극훈, (2018), '헤겔의 법철학에 나타난 범죄와 형벌의 교정학적 의미', 교정담론 제12권 1호, pp. 113-136, 아시아교정포럼.
- 조극훈, (2018), '헤겔철학에서 용서담론과 회복적 정의, 문화와 융합', 제39권 5호.
- 조은경, (2005), '교정심리학의 필요성', 교정연구, 27, pp. 13-25, 한국교정학회.
- 조준현, (2003), '범죄원인이 가능성과 한계', 교정연구, 19호, pp. 253-277, 한국교정학회.
- 조준현, (2005), '교정학, 범죄학 그리고 형사정책의 관계', 교정연구, 제27권, 한국교정학회.
- 차명호/남정아, (2016), '교정상담 프로그램 모형 개발', 교정연구, 26(4), pp. 3-19, 한국교정학회.
- 천정환, (2019), 가족관계 교정상담의 발전적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효연구, 29, pp. 51-80.
- 최종고, (2002), 법철학, 서울: 박영사.
- 한인섭/신역, (2006), '체사레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서울: 박영사.
- 황실중, (2008),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계약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논문지, 제48권, 범한철학.
- 황성현, (2012),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학', 한국범죄학, 제6권 1호, pp. 165-207, 대한범죄학회.
- 허주욱, (2011), '교정보호학', 서울: 박영사.
- 홍종관, (2013), '교정상담의 이론과 기술', 청소년행동연구, 제18권, pp. 93-112.

[외국 문헌]

- Brian Thorne & Pete Standers. (2013). '칼 로저스', 박외숙, 고향자 옮김. 서울: 학지사.
- Carl Ransom Rogers. (1998). '칼 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승호, 한성열 옮김. 서울: 학지사.
- Carl Ransom Rogers. (2007).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은 옮김. 서울: 학지사.
- Carl Ransom Rogers. (2009). '진정한 사람되기(On Becoming a Person)'.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 G.W.F. (2017). '헤겔과 시민사회'. 박배형 주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Hollin, C.R. (1999). "Treatment Programs for offenders: Meta-analysis, "what works"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2, 361-371.
- Polaschek, A. Day & CR Hollin. (2019). The Handbook of Correctional Psychology. Chichester: Wiley.
- Ronald L. Akers 외. (2017). 범죄학 이론. 원저: Criminological Theories(1999) 민수홍 등 역. 파주: 나남.
- Rose, David. (2015). '헤겔의 법철학 입문'(Hegel's Philosophy of Right). 이종철 옮김. 파주: 서광사.

교도소를 위한 변론

윤영석

변호사, 법학박사



교도소(矯導所)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장소’ 정도가 될 것이다. 즉, 교도소는 단순히 일정한 시간 동안 죄인을 가둬두고 방치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러한 장소는 감금소 내지 감금원이라 부를 수는 있을지언정 교도소라고 부를 수는 없다. 교도소는 감금과 노역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감금과 노역은 죄인의 사회적 자활이나 악성향의 교정, 재범의 방지를 최종 목표로 한다.

교정·교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죄인을 교도소에 가둔 국가는 사법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교도소 수감자를 재활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강력범을 제외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언젠가 됐든 사회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국가는 수감자들을 잡아둔 기간 동안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의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바뀐 사회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재차 범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상당한 시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수감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류층을 전전하거나, 아예 재범을 발생시켜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그 행위자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도소의 책임은 막중하다.

아동을 참혹하게 강간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조모 씨나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김모 씨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내는 범죄를 일으킨 자들의 형기가 속속 만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들은 각각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법원의 판결기간을 초과해 가둬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것은 형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위법을 넘어 위헌이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동의해 탄생시킨 헌법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들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지, 선량한 사회적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 재탄생됐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교도소라는 기관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전과자의 재범이나 사회적응 실패가 오롯이 교도소의 책임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세상에는 ‘절대 교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모두 같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능력은 학습시킬 수 없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교정활동도 효과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이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이들을 교화시킬 수는 없는 반면, 시간이 흐르면 이들은 사회로 자연스럽게 복귀한다. 시간은 악인의 편이다.

어려움 많지만... 개선될 여지 충분해

교도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도 어려움이 드러난다. 교도관 1인이 담당해야 할 죄수는 너무 많고 이들 모두가 교도관에게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교도소 운영과 교도관의 일은 전혀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호적이거나 화려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 교도소와 교정작업은 항상 ‘잘 되지 않을 때’만 주목을 받는다. 교도소와 교도관의 헌신적 노력으로 교정에 성공한 범죄자의 사례는 결코 언론과 여론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도소를 책임지는 교도관들은 항시 적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죄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다. 문제의 스펙트럼은 작게는 사소한 지시 불복종이나 욕설부터, 크게는 다른 범죄자 혹은 교도관에 대한 흉기 난동까지 다양하다. 무차별 민원을 넣거나 터무니없는 양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교도관을 골탕 먹이는 ‘지능형’ 죄수들도 있다. 사회적인 시선은 또 어떠한가? 최근에 크게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낮잡아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

교도소 운영시설에 필수적인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사, 간호사, 약사에 게 있어 교도소는 그리 매력적인 직장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가시밭길을 걷길 자처하는 의료인들만이 교도소에 지원한다. 그 수는 매우 적다. 상당수 교도소는 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어 교도소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행형(行刑)에 관한 여러 제약과 복잡한 절차도 교도소를 힘들게 한다. 처리해야 할 행정적 서류가 무척이나 많다. 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인 접견, 편지 왕래, 개인물품 구매 등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업무도 철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집행기관은 당연히 절차적 엄격성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효율성과 유연성 감소, 그리고 법집행자들의 희생을 바치게 된다.

그렇지만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우선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치 점과 다른 점이 선으로 연결되듯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점은 선을, 선은 면을 이루고 면은 결국 입체를 이루듯이 우리의 교도소와 교도관, 교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도 서서히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살펴보는 접견제도

김소라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감

I. 접견의 종류

1. 기본권에 따른 구분
2. 접견 장소·수단에 따른 구분

II. 접견 관련 기본권

1. 수용자의 기본권
2. 변호인의 기본권 -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기본권 - “직업 수행의 자유”

III. 접견 종류별 헌법재판소 결정

1. 변호인 접견
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접견
3. 일반 접견
4.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타인과의 교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¹⁾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전화, 편지, 접견과 같은 다양한 외부와의 접촉 수단을 규정하여 수용자에게도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접견은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로 하여금 타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밀접한 교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외부 교통 수단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변호인 및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해당 수용자의 헌법상의 기본권 중 하나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접견은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허용하는 수단인 만큼 감염병의 유입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물품 반입과 접견인을 매개로 한 공범 간 증거인멸 수단으로의 이용 가능성 등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통제를 요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용자의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²⁾

이에 지난 2007년 말, 단 6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행형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신법인 「형집행법」에는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접견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접견 횟수·시간·장소·녹음 및 녹화, 교도관의 참여 여부 등의 규제 수단을 접견의 종류 및 수용자별로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 2003. 11. 27. 결정 2002헌마93 참조

2 헌법재판소 2011. 5. 26. 결정 2009헌마341 참조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후 약 15년이 지난 현재, 접견에 관한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다. 크게는 수용자의 기본권 제고의 측면에서 접견 기회가 확대되거나 관련 규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두세 차례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에 접견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정시설 내 접견제도의 변화·발전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접견의 종류와 각 접견별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접견제도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되었던 헌법소송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 접견의 종류

1. 기본권에 따른 구분

접견은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크게 변호인 접견,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이하 “변호사 접견”) 및 일반 접견으로 구분되며, 기타 기본권의 보장과는 무관한 수사접견 등 공무상 접견이 있다. 각 접견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이하와 같다.

접견 종류	관련 기본권
변호인 접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변호사 접견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일반 접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 공무상 접견은 수용자의 기본권과 무관하므로 본 논의에서 제외함

실무적으로는 변호인과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통칭하여 “변호인 접견” 또는 “변호사 접견”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양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 및 「형집행법」상 근거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송사건에 있어서 접견 상대방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변호사 접견을 위해 요구³⁾하고 있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일반 접견인(접견 민원인)으로 취급된다.

3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8헌마60 결정을 통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접견 장소·수단에 따른 구분

접견 장소는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 및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로 구분된다.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는 일반접견실을 말하며, 일반접견이 위 장소에서 진행된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는 장소변경접견실 및 변호인(변호사) 접견실이 있다. 일반접견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소변경접견실에서 접견을 진행할 수 있으며,⁴⁾ 변호인 접견 및 변호사 접견은 반드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⁵⁾

한편 접견 수단에 따라서는 원칙적 형태인 “대면접견”과 새로운 형태인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집행법」은 기본적으로 교정시설 방문을 통한 대면접견을 예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원거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방식이 등장,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접견의 일종으로 포섭되었다.⁶⁾

II. 접견 관련 기본권

1. 수용자의 기본권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⁷⁾)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에게 변호인 접견이 불허될 경우 위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 발생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기본권의 하나라고 판단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은 이미 판례나 학설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 헌법적으로 해명이 완료된 사안이라 밝힌 바 있다.⁸⁾

4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5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6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은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화상접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7 「형집행법」 제88조, 제84조

8 헌법재판소 1991. 7. 8. 결정 89헌마181

2)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용자도 재판청구권의 향유 주체로서 민사·행정·헌법·가사소송 등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⁹⁾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수용자가 주로 제기하는 민사·행정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 접견”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소장 등 소송서류 제출, 재판 출석을 위한 출정 기회만 보장하면 될 것이지, (일반접견보다 접견상의 제약이 완화된) “변호사 접견”의 기회 및 장소까지 제공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 「행형법」 시절 수용자의 일반접견 횟수 초과를 이유로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¹⁰⁾ 지난 2013년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소송에서의 법률전문가의 증대되는 역할, 민사법상 무기 대등의 원칙 실현, 헌법소송의 변호사강제주의 적용 등을 감안할 때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변호사 접견”제도가 재판청구권 보장의 전제가 됨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결정 2011헌마122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때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도 포함된다. (중략)

따라서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소송에서의 법률전문가의 증대되는 역할, 민사법상 무기 대등의 원칙 실현, 헌법소송의 변호사강제주의 적용 등을 감안할 때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⁹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변호인 접견으로 보장되므로 “재판청구권”과는 무관하다. 한편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대리 등을 위해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는 무관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¹⁰ 헌법재판소 2004. 12. 16. 결정 2002헌마478

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수용자의 일반접견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접견을 통해 가족인 수용자를 만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형성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의 한 발현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가족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3. 11. 27. 결정 2002헌마193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구속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이처럼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변호인의 기본권 -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변호인 접견”이 수용자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수단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헌법적으로 해명된 바 있다.

반면 이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어야 하는 수단인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 변호인의 접견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헌법재판소 1991. 7. 8. 결정 89헌마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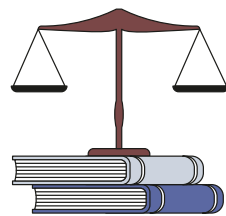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이 그친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결정 2012헌마610

변호인에게 기록 열람·등사권이나 접견교통권 등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모두 피체포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자기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체포자 등의 조력자로서 피체포자 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를 변호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결정¹¹⁾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중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위 결정들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및 피의자신문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과 관련된 사안으로, 교정시설 내 변호인 접견권과 직접 관련된 판단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접견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전제 하에)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 이러한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에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1 헌법재판소 2003. 3. 27. 결정 2000헌마474, 헌법재판소 2017. 11. 30. 결정 2016헌마503

헌법재판소 2019. 2. 28. 결정 2015헌마1204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피의자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기본권 - “직업 수행의 자유”

종래에는 소송사건 진행 시 “변호사 접견”과 관련하여 수용자가 청구인으로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스스로 본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형사재심사건을 청구하기 위해 수형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호사 접견”을 위해 한 교정시설을 방문하였다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일반접견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본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에 대해 2018헌마60 결정을 통해 변호사의 접견권은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 결정에 의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21. 10. 28. 결정 2018헌마60

청구인은 수형자인 박○○의 형사재심청구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된 변호사로서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접견신청을 하였고 박○○과의 접견은 청구인의 직업 수행에 속한다.

변호사접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월 4회, 회당 60분의 추가적인 접견이 가능하여 일반접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접견이 아니라 일반접견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중략)

헌법재판소 2009. 10. 29. 결정 2007헌마992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의 위와 같은 중요성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위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중략) 결국 출정피고인에게도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지만, 계호의 필요성과 접견의 비밀성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 기준 아래에서 그 절차, 시간, 장소, 방식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접견 종류별 헌법재판소 결정

1. 변호인 접견

1) 절차, 시간, 장소, 방식 등의 법률상 제한 가능성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목적 하에서 접견의 시간·장소·방법 등을 법률상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형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자유롭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접견에 관한 일체의 시간적 제한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11. 5. 26. 결정 2009헌마341

수용자처우법 제84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접견시간 제한의 의미는 접견에 관한 일체의 시간적 제한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이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그 접견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인 때에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용자처우법 제8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미결수용자·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5. 26. 결정 2009헌마34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시점을 전후한 변호인 접견의 상황이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접견실 예약이 마감되었음에도) 항상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접견을 원하였던 날 당일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어 접견을 하지 못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이 별도의 예약절차 없이 수용자가 원하는 한 항상 변호인과 접견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9. 7. 9. 결정 2019헌마599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형집행법 제41조 제4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등)상, 피청구인은 교도소 내 접견 수요 또는 접견실의 사정 등에 비추어 원활한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접견 사무를 진행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예약절차 없이 수용자가 원하는 한 항상 변호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CCTV를 통한 감시·녹화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의 참여 및 청취·녹취를 금지하되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CCTV를 통한 감시·녹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 접견실을 CCTV를 통해 감시·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16. 4. 28. 결정 2015헌마243

형집행법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호 및 제162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변호인 접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금지물품의 수수를 적발하거나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CCTV를 통해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이 사건 CCTV 관찰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접견

1) 접견 장소 관련

수용자가 소송 준비를 위해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효율적 재판준비의 곤란 등을 이유로 일반접견실에서의 접견은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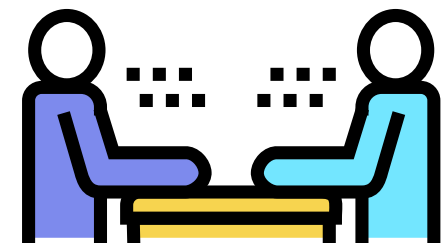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2013. 8. 29. 결정 2011헌마122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금지물품 반입 시도 등의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접견이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한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에 따라 2014. 6. 25. 문제가 되었던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접견에 대한 예외에 “변호인 접견”만을 포함하던 것에 “변호사 접견”이 추가되었다.

2) 접견 횟수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기존에는 변호사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일반 접견 횟수 초과시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2002헌마478), 2015년 입장을 변경하여 변호사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11. 26. 결정 2012헌마85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 이외에 서신,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신, 전화통화는 검열, 청취 등을 통해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노출되어 상담과정에서 위축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신은 접견에 비해 의견교환이 효율적이지 않고 전화통화는 시간이 원칙적으로 3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송준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략)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위 결정에 따라 2016. 6. 28.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되어 수용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간의 “변호사 접견”이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3) 접견의 녹취 관련

앞서 살펴본 2011헌마122 결정이 있기 전 변호사 접견이 일반접견실에서 이루어지던 당시 「형집행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수용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간의 접견을 녹음, 기록 기록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그 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녹음·녹화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결정 2011헌마398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제3자인 교도소 측에 접견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로서 그 내용이 구금시설 등의 부당처우를 다투는 내용일 경우에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녹화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략)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과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에 대해서는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녹음, 기록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은 2016. 6. 28. 「형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당시 제62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법령상 반영되었다.

4)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019년, 재심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에 있어 청구 요건과 절차상의 어려움을 감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¹²⁾에 대해서도 변호사 접견을 사건 당 2회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¹³⁾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는 무관하게 법무부가 자체적,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위 개정이 있기 1년 전, 재심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행정 등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청구에 대해 재판관 과반수인 5인이 인용의견(기각의견 4인)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¹⁴⁾

¹² 「형집행법」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접견하려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선임 전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선임된 후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구분하고 있다.

¹³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¹⁴ 결정문에서 재심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에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2019년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이 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2. 2. 24. 결정 2018헌마1010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의 주된 목적은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소송준비와 소송대리 등 소송에 관한 직무활동은 소송대리인 선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그 접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용자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과 같은 형태로 허용한다면 소송제기 의사가 진지하지 않은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소송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수용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도 선임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특별한 절차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청구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접견상의 제약을 완화하고 있으나, 민사·행정 등 일반적인 소송사건의 경우 형 집행의 위인이 되는 확정판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거나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장소나 방법에 특례를 두어야 할 정도로 요건과 절차가 특별히 까다롭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업무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5인의 인용의견>

수용자가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단계는 소송사건의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해당하므로, 이 단계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제공받고, 소송사건 수입에 대하여 소송의 상대방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밀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의사소통 및 소송사건 수입의 비밀유지를 제약하여 수용자는 적시에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는 그 직무인 소송사건의 수입을 위한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용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 등은 수용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거나 교정시설의 장의 조치 기타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로 인해 직접 수용자에게 서류를 건네줄 수 없어 문서 송부나 반입을 하게 될 경우 교정시설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교정시설 관련자에게 수용자의 소송수임자료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어 비밀유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용자가 소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필요성이 크다. (중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일반 접견

1) 미결수용자 접견의 녹음·녹화

「형집행법」 제41조 제4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와 접견인 사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송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결정 2014헌바401

이 사건 녹음조항은 수용자의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추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용자는 증거인멸 또는 형사 법령 저촉 행위를 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이를 억제하게 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미결 수용자는 접견 시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마약류사범의 경우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부로 마약을 반입하여 복용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교정시설의 장은 미리 접견내용의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

법무부가 2020. 1. 1.부터 실시하고 있는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에 대하여, 사전 예약 없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민원인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없다고 보아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1. 6. 22. 결정 2021헌마6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당일 방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당일 방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의 실시로 인하여 당일 방문 접견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1) 화상접견 시간제한

구 「행행법 시행령」 제54조(현행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는 수용자의 접견시간을 30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정시설에서는 화상접견을 10분 이내로 부여하고 있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접견시간 부여의 정도는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10분 이내의 시간 부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9. 24. 결정 2007헌마738

자유형 수형자는 구금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며, 외부접촉을 전제로 하거나 행형 시설의 적극적인 조력을 요하는 기본권들도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 정도 제한된다. 또한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라는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정당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 등의 접견권을 나뉘대로 보장하면 족한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수형자에 대한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피청구인 00교도소장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00교도소의 인적, 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도 골고루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가 행정재량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마약류수용자 제외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마약류수용자를 제외하고 있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 마약류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스마트접견은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여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관리가 없다고 보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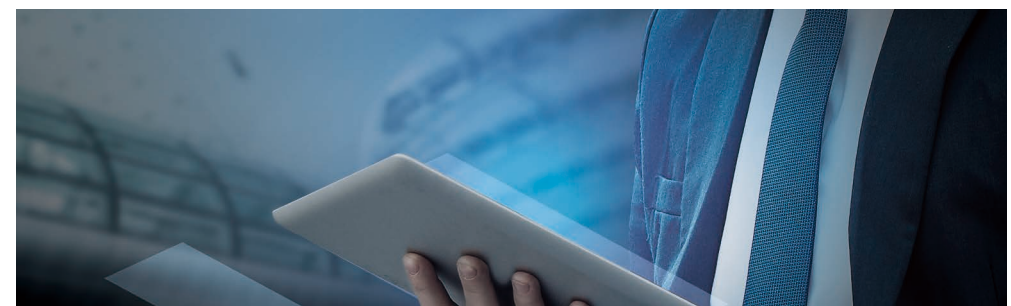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2020. 6. 9. 결정 2020헌마682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제도인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2조 등), 「형집행법」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소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장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미결수용자 제외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미결수용자를 제외하고 있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스마트접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대면 접견의 기회가 월등히 많이 부여되어 있어 수형자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미결수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1. 11. 25. 결정 2018헌마598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은 법무부장관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지침조항을 제정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대면 접견 1회로 취급되는데, 미결수용자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면 접견의 기회가 월등히 많이 부여되므로, 새로 도입하는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수형자의 민원인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줄 필요가 있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인멸 시도 등 접견제도를 남용할 위험이 수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도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그 곳에 설치된 영상통화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화상접견은 할 수 있다. 수형자의 배우자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 사이에 차별을 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상 접견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송 중 유의미한 결정들을 살펴보았다. 기본권의 최대 보장을 원하는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를 통제해야 하는 교정시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왔다.



주로 접견 시간 부여 및 시간대 설정, 사전예약제 등 접수 방식 설정,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의 접견 대상자 선정과 같이 접견 시행상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접견 관련 수용자의 기본권의 범위 자체는 꾸준히 확대시켜 왔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에 있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들은 몇 차례의 개정 절차를 통해 「형집행법」에 그 흔적을 남겼다. 결국 접견제도의 변천사는 헌법재판소의 저울의 추가 기울어진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 것이다.

2010년대 이후로는 헌법재판을 통해 접견 관련 기본권이 비단 수용자 뿐 아니라 변호인 및 변호사에게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다.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접견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권이 그들 자신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권 또한 헌법재판관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팬데믹 상황에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일정부분 접견상의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개별 변호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의 기본권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⁵⁾ 또한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시선계호에 대해, 해당 위치가 가청거리에 있어 접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수용자의 접견 관련 기본권의 확대 추세 및 변호사 스스로 접견 관련 기본권의 향유 주체로서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교정 행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호인력 추가 확보, 접견시설 확충 및 정비와 같은 인적·물적 차원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 동향 파악, 변호사협회 및 인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접견 관련 각종 법령 및 지침 등 제 규정의 정비를 통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15 위 소송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접견 제한이 사라진 후 대부분 취하되었다.

외국의 교정사례 연구

윤영석

변호사, 법학박사

I. 들어가며

II. 각국의 교정시스템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프랑스
5. 독일
6. 중국
7. 노르웨이
8. 일본

III. 맺음말

국문 요약

교정활동은 동태적,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적용되는 교정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교정활동도 하나의 지점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의 교정활동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서구 각국의 경우, 범죄에 대한 복수보다는 재범의 방지에 교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 캐나다, 영국, 일본, 노르웨이의 교정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선진국이라도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교정기관 수용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반인권적인 환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권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중국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적지 않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교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은 교정활동을 꾸준히 탐색,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시행방식을 참고로 하되, 이를 무조건 추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실태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 교정, 교정활동,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

I.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교정활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여 큰 시련을 겪어 왔다. 다행히 지금은 국가와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관리가능한 선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는 교정활동에 커다란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교정활동을 스스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교정활동 또한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의 재범 방지이다.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정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¹⁾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나온다. ① 교정활동은 무엇을 의미하

1 이영근a,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교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17, 99면.

는가? ② 교정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 나라의 교정작용을 정의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도 나라마다 달랐듯이, 교정활동과 교정철학도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 몇 나라를 선별하여 이들의 중점적인 교정활동을 살펴보고, 우리의 교정활동에 참고할 만한 바를 탐구하여 보기로 한다.

II. 각국의 교정시스템

1.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은 산업, 군사, 문화, 과학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선진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는 미국이 자신있다고 할 만한 영역이 아니다. 즉, 미국의 많은 도시는 높은 범죄율로 골머리를 썩고 있으며, 살인, 강도, 마약 범죄 등이 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양형수준이 높은 편임을 참작하면, 미국의 교정활동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교정기관의 통제 아래 있는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세기 말 무렵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²⁾ 인종 간 구금률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 만큼 “올바른 교정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오랫동안 깊게 이루어져 왔다.

미국 교정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연방정부의 교정국과 주정부의 교정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³⁾ 미국은 대체로 엄벌주의에 기초를 둔 사법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관대한 개방적 처우를 하지만 중범죄자 수용시설에서는 인권유린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⁴⁾

미국의 교정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2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Law)에 의한 교정이다. 2번째 기회법은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이 함께 조력하여 수용자의 재활을 돕

2 아래 표와 같다(황영호, “민영교도소 해외운영 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국회, 2011, 34면에서 재인용).

구분	구금시설(개소)	사회내처우시설(개소)	수용정도(명)
1995년	29	81	2만 1,000명
2000년	101	163	10만 5,000명
증감	약 5배	약 2배	약 5배

3 이영근a, 앞의 글, 117면.

4 이영근a, 앞의 글, 117면.

‘2번째 기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국립 재사회화 센터 홈페이지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과 소년비행방지구(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여러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⁵⁾ 그럼으로써 수용된 사람이 사회에 부작용 없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⁶⁾

민간은 정부와 협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갱생보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중간 처우 시설인 사회복귀주거센터(RRC : Residential Reentry Center)에서는 범죄자가 사회에 정상적인 시민으로 복귀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연방정부의 보호관찰이나 CSOSA(Court Service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의 감독을 받는 수범자가 주요한 대상이다.⁷⁾ 이 시설에서는 각 수용자에게 맞춤형 취업알선이나 상담, 주거 물색 서비스를 제공한다.⁸⁾ 수용자들의 예술활동도 교정의 효과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른바 ‘Prison Art’라고 불리는 재소자들의 회화, 문신, 공예 활동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고

5 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resources/all>> (2022. 7. 28. 방문).

6 정소영, “미국의 갱생보호 보조금 제도”, 『연세법학』 제29호, 연세법학회, 2017, 91면.

7 유병철, “외국의 갱생보호에 관한 비교고찰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61호, 한국교정학회, 2013, 76면.

8 유병철, 앞의 글, 76-77면.

정서 함양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Prison Art의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는 보통 2019년 12월의 'The Pencil is a Key' 전시회가 꼽힌다. 이 전시회는 교정기관에 수용되었던 예술가나, 교정기관에서 미술을 배운 사람들이 작가로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⁹⁾

한편, 미국은 교정활동에 민간이 폭넓게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정활동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이 관리주체가 되는 민영교도소가 다수 설립되어 있다. 정부로서는 나날이 증가하여 가는 교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민영교도소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통계는 민영교도소가 국가교도소와 비교해 8.9%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¹⁰⁾ 그러나 미국 민영교도소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므로 수감자 감시·감독의 질이 나쁘고,¹¹⁾ 더 많은 수용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로비활동¹²⁾을 하는 등 부작용도 보인다.¹³⁾ 또한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교도관들이 사인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도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¹⁴⁾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교도소의 수용자가 과중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¹⁵⁾

미국에서 범죄율은 오랫동안 다루어졌던 화제이고, 정치 영역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입법·사법·행정부가 범죄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내부의 범죄라는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것을 본다면 교정활동이 결코 쉬운 것이라거나 자원을 쏟아부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특정한 범죄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형사법정에서 특수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으로, 약물 중독범죄법원(Drug Court),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 가정·청소년 법원(Family and Juvenile Court) 등이 있다.¹⁶⁾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9 유신혜, "Prison Art의 유용성에 관한 소고 - 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2020, 66면.

10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American correction" n. d. (https://www.privateprisonnews.org/media/publications/cca_private_public_partnership_in_american_corrections_promotional_brochure.pdf) <2022. 11. 2. 방문>.

11 허경미a,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7호, 한국교정학회, 2012, 176면.

12 허경미b,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쟁점", 교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20, 89면.

13 허경미a, 앞의 글, 180면.

14 이에 관한 연구로 박상열,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교정연구 제17호, 한국교정학회, 2002 참조

15 허경미b, 앞의 글, 80-81면.

16 한우재/이신영, "문제해결법원의 역량과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수와의 관계 :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도입의 함의", 교정담론 제14권 제3호, 아시아교정포럼, 2020, 245-248면.

17 한우재/이신영, 앞의 글, 251면.

2. 영국

영국은 범죄자의 효과적인 갱생을 위해 2004년경 교정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갱생보호기관을 통합한 국가범죄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NOMS)을 설립하였다. 이후 NOMS는 일부 기능을 법무부에 이전시키고 교정청(His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 HMPPS)로 이름을 바꾸었다.

아래 그림은 HMPPS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다. GPS를 통한 범죄자 추적이나 재소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여성 재소자를 위한 지원사례 등 교정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HMPPS의 업무는 수용된 자의 처우와 교육·재범방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계하여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있다.¹⁸⁾ 범죄자 관리인(Offender Manager = OM)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주거, 직업훈련 및 고용, 중독물, 재무관리, 자녀·가족 태도와 사고 및 행동 등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¹⁹⁾ 범죄자 관찰자



18 신이철, "외국의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제도의 현황 - 특히,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1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5, 63면.

19 신이철, 앞의 글, 64면.



(Offender Supervisor), 사례 관리자(Case Administrator), 협력기관 종사자(Key Worker) 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 범죄자와 출소자의 가족도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²⁰⁾ 교정공무원들은 모든 교정활동에 능숙한 것이 아니고, 제한 없는 교정자원을 지닌 것도 아니므로 수용자에게 필요한 처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상호역할 분담이 필요하다.²¹⁾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160개에 이르는 교정시설을 도주 우려와 보안 정도에 따라 A등급(최고 구금등급)부터 D등급(개방시설)으로 나누고 있다.²²⁾ 출소 6개월 전에는 일반주택 형태의 중간처우 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²³⁾

영국 교정제도 중 특수한 것은 소년범의 경우 이른바 구금 및 훈련명령(DTO :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이상인 소년 등 사회 내 처우가 적당하지 않은 소년에게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²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자유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소년은 소년수용시설, 보호훈련소, 아동보호시설 등 3종류의 소년 구금시설 중 하나에 머무르며 인성 교육과 특별프로그램 이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²⁵⁾ 또 영국에서는 성범죄사범에 대하여 SOTP(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20 신이철, 앞의 글, 63면.

21 김안식, “외국 교정의 민간참여 실태 및 도입활동 방안”, 교정연구 제23호, 한국교정학회, 2004, 49면.

22 이영근a, 앞의 글, 119면.

23 이영근a, 앞의 글, 119면.

24 김봉수/추봉조,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22, 112면.

25 김봉수/추봉조, 앞의 글, 113-114면.

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외에도 의사결정기술과 대인관계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⁶⁾

범죄자나 출소자는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사회에서 배척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회에서 배척된 계층을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하게 만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활동과 생계비 지원, 직업 알선 등이 이 활동의 일환이다.²⁷⁾ 또 영국은 회복적 사법의 하나로 교도소-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Inside Out Trust)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²⁸⁾ 재범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출소 직후 마땅한 거처가 없는 출소자에게 적당한 주거지원 작업을 하기도 한다.²⁹⁾

3. 캐나다

교정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교정활동을 책임지는 것은 캐나다 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Canada = CSC)이다. CSC는 캐나다 전국을 5개의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역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CSC는 전국에 최대보안교도소 6곳, 중간보안교도소 4곳, 최소보안교도소 5곳, 가석방 사무소 92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교정청은 독자적으로, 혹은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연방교정청이 직접 운영하는 핵심적인 출소자 사회복귀 사업인 CORCAN(Corrections Canada)은 현실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직업의 훈련과 취업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⁰⁾ 특히 민간기관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출소자가 유해물질관리, 산업 청소, 지게차 운전, 건설 안전 등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³¹⁾ 여성 및 캐나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더욱 특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캐나다 교정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최상급의 배려를 한다는 점이다.³²⁾ 정신장애인 Ashley Smith가 목을 매어 자살하려 하는 것을 교도관들이 CCTV를 통해 목격하고도 4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수용자에 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³³⁾

한편 캐나다는 독특한 가석방 시스템을 둔 것으로도 유명하다. 캐나다는 2년 미만의 형이

26 박상진/신준섭,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328-329면.

27 강경래, “사회적 배제와 포섭, 그리고 범죄자 처우”, 교정연구 제63호, 한국교정학회, 2014, 79면.

28 김용세,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187면.

29 유병철, 앞의 글, 75면.

30 전윤미/이용주,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정 복지 정책 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5권 제2호, 2020, 140면.

31 신이철, 앞의 글, 72면.

32 이영근a, 앞의 글, 118면.

33 허경미c,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략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6, 32-33면.



확정된 수형자는 주교도소에, 2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연방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³⁴⁾ 수용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용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형기 감소의 혜택을 받는다.³⁵⁾ 여러 개의 조건부 석방제도(Conditional Release)를 두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 교정제도의 큰 특징이다.

임시가석방(Temporary Absences)은 지역사회 프로젝트, 가족과의 만남, 자기계발, 의료적 사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임시가석방은 교도관 동행자가 있는 경우(ETA: escorted temporary absences)와 없는 경우(UTA :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로 구분된다. ETA는 잔여 형기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캐나다 교정국이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TA는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량의 1/6을 복역한 후에, 2-3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은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가석방 가능일의 3년 이전부터 신

34 이영근, 앞의 글, 117면.

35 이영근, 앞의 글, 117면.

청자격이 주어진다. 중범죄자는 UTA를 신청할 수 없다.

주간가석방(Day Parole)은 재소자에게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가석방된 자는 교정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시설에 수용된다. 주간가석방된 자는 주간에는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야간에는 지정된 시설로 돌아갈 의무가 있다.

가석방(Full Parole)은 범죄자를 완전히 가석방시키는 것이며, 보통 주간가석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법정석방(Statutory Release)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석방이 아니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도 아니다. 법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자는 형기의 2/3를 복역한 후에는 캐나다 교정시설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다만 지속해서 교정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종신형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법정석방의 대상이 아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정석방된 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정석방된 자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

캐나다는 처벌보다는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소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캐나다 가족과 교정 네트워크(Canadian families and corrections network: CFCN)라는 간행물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³⁶⁾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은 아니다. CSC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교정시스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피해자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하기도 한다. 캐나다 교정청 홈페이지에서는 범죄와 교정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교도소 재소자와의 협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범죄자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캐나다의 교정 활동은 해당 범죄자 1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죄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까지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는 범죄자가 출소 후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교정활동에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캐나다의 교정활동은 우리나라가 참조할 만하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지만 교정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죄수들의 과밀화와 높은 자살률이 국제세계에도 알려져 유럽의회 및 유엔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³⁷⁾ 이는 프랑스 법원의 엄벌주의적 태도와 구금형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지나친 엄벌

36 전윤미/이용주, 앞의 글, 141면.

37 허경미, "프랑스 교정행정의 개혁과 과제", 「교정연구」 제64호, 한국교정학회, 2014, 61면.

주익는 수용자의 수를 적절 수준 이상으로 높이게 되고 이는 1인당 투입될 수 있는 교정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수용자에 대한 의료나 직업훈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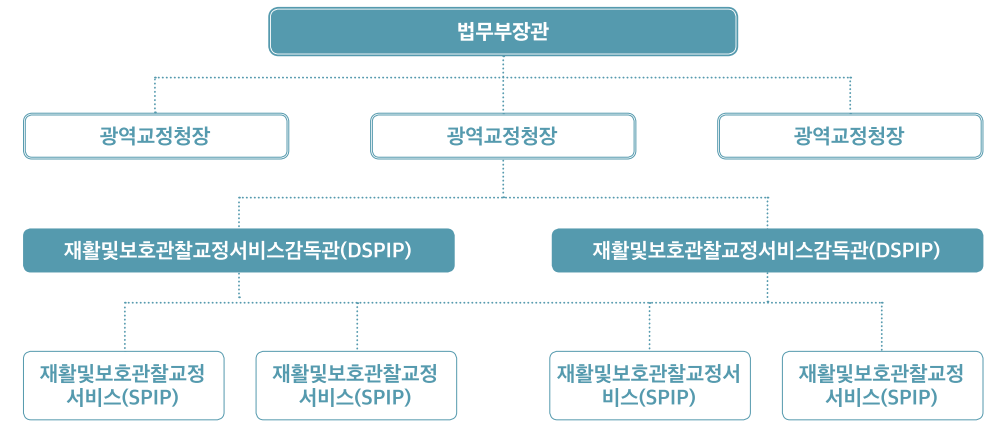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은 교정 및 보호관찰청(SPIP =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이다. SPIP는 전국에 지소를 두고 재소자의 재활과 보호관찰을 관장한다. 재활과 보호관찰 사무는 주로 SPIP에서 맡지만, 경찰이나 헌병대가 일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은 주로 검사와 형집행판사(JAP = Jud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이다.³⁸⁾ 프랑스의 교정시설은 구치소(Maisons d'arrêt), 중기형교도소(Centres de détention), 장기형교도소(Maisons centrales), 주간구금교도소(Centres de semi-liberté), 소년교도소(Etablissement pénitentiaire pour mineurs), 복합교정시설(Centres pénitentiaires)로 나뉜다.³⁹⁾ 주로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시설에 입소할지가 정해지지만, 형량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프랑스의 여러 교정시설 분포지도⁴⁰⁾



38 허경미,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교정연구 제66호, 한국교정학회, 2015, 37면.
 39 허경미, 앞의 글, 62-63면.
 40 Ministère de la Justice, Chiffres clé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2018(PDF file), p. 2. <<http://www.justice.gouv.fr/prison-et-reinsertion-10036/les-chiffres-clefs-10041/chiffres-cles-de-ladministration-penitentiaire-31922.html>> (2022. 12. 14. 방문)

프랑스의 교정업무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⁴¹⁾



자료 : The European Organization, Summary Information on Probation In France, 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Summary%20information%20on%20France.pdf, 재구성, 2015년 3월 4일 검색.

인권선진국이라 불려 온 프랑스에 맞지 않게 프랑스 교정행정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자 국가적 차원에서 큰 규모의 교정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구금위주 교정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야 하는 작업이었다. 수용자의 수에 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 내에서는 탈주, 교도관폭행, 수형자 간 폭력, 자살 및 자해, 집단시위 등 여러 부조리가 나타나곤 하였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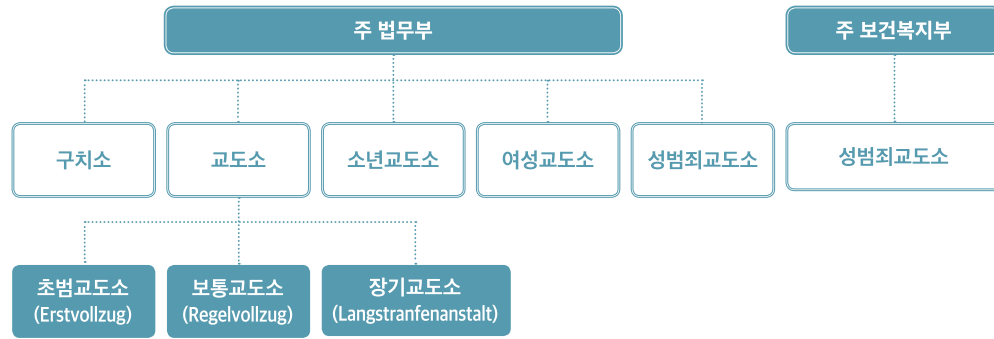
2010년 들어서부터 문제를 인식한 프랑스 당국은 강력한 교정개혁을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수형자의 노동권, 수형자의 자살 및 인권문제, 정교분리문제 등 산적해 있는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⁴³⁾ 민간을 교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⁴⁴⁾ 현재까지 프랑스의 교정개혁이 뚜렷하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않고 있으나, 당국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느린 속도로나마 교정활동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5. 독일

독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정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영미권 국가에서 교도소를 민영화하는 등 직접 교정활동을 하기보다 간접적 후원으로 입장을 정한 것과는 대비

41 허경미, 앞의 글, 40면.
 42 허경미, 앞의 글, 69면.
 43 허경미, 앞의 글, 80면.
 44 허경미, 앞의 글, 4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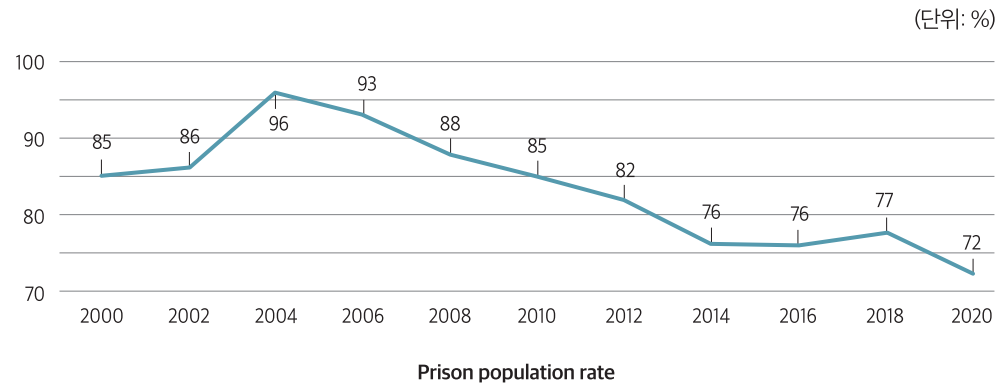
독일의 교도소 조직



자료 : Country Report, Country Report: Germany, <http://www.qcea.org/wp-content/uploads/2011/04/rprt-wip2-germany-en-feb-2007.pdf>; CENTER FOR GERMAN LEGAL INFORMATION, http://www.cgerli.org/fileadmin/user_upload/interne_Dokumente/Legislation/Prison_Act.pdf 재구성

* 허경미, 앞의 글, 83면에서 발췌.

독일 교도소의 수용비율



*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germany>

된다. 이는 독일이 교정분야에 있어 비용절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1949년 독일헌법은 교정분야를 포함한 형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정행정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였다.⁴⁶⁾ 2006년 들어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연방주의를 개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정입법도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맡게 되었다.⁴⁷⁾ 독일에서는 원래 교정시설의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 법무부가 교정시설 대부분을 총괄하고, 주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범죄자 교도소를 운

45 조은미, “독일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6권 제1호, 아시아교정포럼, 2012, 142면.
 46 허경미,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62권 제4호, 한국교정학회, 2014, 82면.
 47 허경미, 앞의 글, 82면.



영하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 교정시설은 교정직원과 수감자 숫자가 1:1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벌어지는 폐해가 없으므로 수감자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좋다. 예컨대 수감자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고 다량의 책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⁴⁸⁾ 수감자는 즉각적인 의료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보수를 받기도 한다.⁴⁹⁾ 상당수 나라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과밀수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독일에서도 교도소의 민영화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다. 독일의 민간교도소는 엄밀히 말하면 민·관협력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형태의 민영교도소라 할 수 있다.⁵⁰⁾ 정부는 민간 영역에 교도소의 운영을 전부 맡기고 지원금을 지급하며, 민간은 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교도작업장이나 운동장, 수용동 등을 만들고 운영하게 된다.⁵¹⁾ 교도소 운영으로 얻는 이익금은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에 분배된다.⁵²⁾ 다만 교정작업의 모든 영역을 민간이 맡기는 어려운바, 헤센 주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기업운영을 위한 주문의 획득, 작업장 운영, 식당과 일상용품 지급, 설비관리, 세탁, 청소, 수리, 폐쇄형 TV의 감시, 여가활동, 도서관 안내, 전문자원봉사자, 체육활동, 의료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학교 교육, 일부 행정업무와 통신문무 등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다.⁵³⁾

48 류여해, “독일의 교정현황에 대한 소고”,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199면.
 49 류여해, 앞의 글, 200면.
 50 조은미, 앞의 글, 133면.
 51 조은미, 앞의 글, 138면.
 52 조은미, 앞의 글, 138면.
 53 조은미, 앞의 글, 140면.

6. 중국

중국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일반인의 인권이 서방 각국보다 낮다고 여겨져 왔다. 실제로 중국의 수형자들은 감형이나 가석방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⁵⁴⁾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 중국의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제법 배려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수용시설에는 수용자 100명당 의사 1인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감옥마다 의료 인력이 수십 명 이상이 되는 등 수형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⁵⁵⁾ 노동작업의 생산성도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⁵⁶⁾ 다만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므로, 노동의 강도에 걸맞은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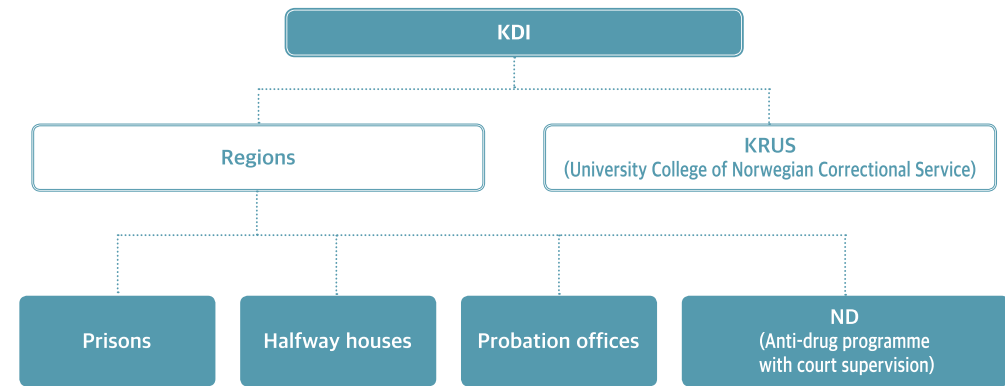
중국은 오랫동안 장기형주의, 엄벌주의를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 이념 주입을 중심으로 한 교정활동을 수행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범죄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지역사회 교정형태로 교정작용 방향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아 중국은 수형자가 출소 후 출소자의 거주지 관할 국가기관과 연계관계가 비교적 잘 되어 국가기관에서 출소자의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출소자의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된다.⁵⁸⁾ 다만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 실제 교정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의 부재와 예산 부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⁵⁹⁾

7.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호텔 수준의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에서 범죄자들은 인간적으로 취급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엄벌주의 입장에서는 노르웨이의 교정시설을 비판하지만, 노르웨이의 출소자 재범률은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물론 노르웨이 내에서도 범죄자들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노르웨이

54 한상돈a, "현행 중국감옥법의 입법 및 시행에 관한 소고", 교정연구 제43호, 한국교정학회, 2009, 133면.
 55 이영근b, "한-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교정연구 제39호, 한국교정학회, 2008, 28면.
 56 이영근a, 앞의 글, 112면.
 57 이영근b, 앞의 글, 28면.
 58 이영근a, 앞의 글, 113면.
 59 한상돈b, "한국과 일본의 수형자 교육의 실제 -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176-178면.

노르웨이의 교정시스템 조직도⁶¹⁾



*KDI는 노르웨이 교정청(The Directorate of Norwegian Correctional Service)의 약자다.

정부는 범죄자가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교정시설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한편 2016년에는 노르웨이 정부와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시험하는 듯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총기난사로 77명을 살해한 테러범 Breivik이,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국가를 상대로 '재소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이다.⁶²⁾ 이 판결에 의한 파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노르웨이 당국의 교정철학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후로도 노르웨이의 범죄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 394,137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00,636건이 되었다.⁶³⁾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2,000명 정도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며 이들은 사회봉사, 갱생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치료 등을 수행하게 된다.⁶⁴⁾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았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변경하게 된다.⁶⁵⁾

60 최주희/공정식/현문정, "노르웨이의 회복적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6권 제1호, 아시아교정포럼, 2022, 300면.
 61 The Norwegian Correctional Service, 2020 Annual Report, 2021, p.6.
 62 권준성/공정식/현문정, "북유럽국가의 사회내처우 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 153-154면.
 63 권준성/공정식/현문정, 앞의 글, 154면.
 64 권준성/공정식/현문정, 앞의 글, 161면.
 65 권준성/공정식/현문정, 앞의 글, 162면.

Ⅲ. 맺음말

이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교정활동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모든 주요 국가의 모든 교정정책과 교정활동을 일거에 상세히 살펴볼 수 없었던 것은 지면의 한계와 저자의 역량 부족 탓이다. 다만 개략적으로 타국의 교정작용 상황을 일별하여 소개함으로써, 각 소주제에 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저자의 의도는 모두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타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일 것이다. 활발한 교정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강경래, “사회적 배제와 포섭, 그리고 범죄자 처우”, 교정연구 제63호, 한국교정학회, 2014.
- 권준성/공정식/현문정, “북유럽국가의 사회내처우 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
- 김안식, “외국 교정의 민간참여 실태 및 도입활동 방안”, 교정연구 제23호, 한국교정학회, 2004.
- 김용세,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 김봉수/추봉조,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법 교정체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22.
- 류여해, “독일의 교정현황에 대한 소고”,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 박상열,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교정연구 제17호, 한국교정학회, 2002.
- 박상진/신준섭,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 박순용, “한국과 일본의 수형자 교육의 실제 -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교정담론 제13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2019.
- 신이철, “외국의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제도의 현황 - 특히,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1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5.

- 유병철, “외국의 갱생보호에 관한 비교고찰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61호, 한국교정학회, 2013.
- 유신혜, “Prison Art”의 유용성에 관한 소고 - 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2020.
- 이영근a,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교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17.
- 이영근b, “한-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교정연구 제39호, 한국교정학회, 2008.
- 정소영, “미국의 갱생보호 보조금 제도”, 「연세법학」 제29호, 연세법학회, 2017.
- 전윤미/이용주,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정 복지 정책 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5권 제2호, 2020.
- 조은미, “독일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6권 제1호, 아시아교정포럼, 2012.
- 최주희/공정식/현문정, “노르웨이의 회복적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6권 제1호, 아시아교정포럼, 2022.
- 한상돈a, “현행 중국감옥법의 입법 및 시행에 관한 소고”, 교정연구 제43호, 한국교정학회, 2009.
- 한상돈b, “한국과 일본의 수형자 교육의 실제 -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 한우재/이신영, “문제해결법원의 역량과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수와의 관계 :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도입의 함의”, 교정담론 제14권 제3호, 아시아교정포럼, 2020.
- 황영호, “민영교도소 해외운영 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국회, 2011.
- 허경미a,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7호, 한국교정학회, 2012.
- 허경미b,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쟁점”, 교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20.
- 허경미c,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략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6.
- 허경미d, “프랑스 교정행정의 개혁과 과제”, 「교정연구」 제64호, 한국교정학회, 2014.
- 허경미e,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교정연구 제66호, 한국교정학회, 2015.
- 허경미f,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62권 제4호, 한국교정학회, 2014.
- Ministère de la Justice, Chiffres clé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2018(PDF file), p. 2. <<http://www.justice.gouv.fr/prison-et-reinsertion-10036/les-chiffres-clefs-10041/chiffres-cles-de-ladministration-penitentiaire-31922.html>> (2022. 12. 14. 방문)
- The Norwegian Correctional Service, 2020 Annual Report, 2021.
-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American correction” n. d. (https://www.privateprisonnews.org/media/publications/ccca_private_public_partnership_in_american_corrections_promotional_brochure.pdf) <2022. 11. 2. 방문>
- 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resources/all>> (2022. 7. 28. 방문)

NEWS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정본부TV)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January + Vol. 560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2022. 12. 20.(화) 서울구치소 / 12. 22.(목) 수원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12. 26.(월) 인천구치소
주요 내용 수용 관리 등 정책현장 점검 및 현장 직원 격려

교정본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개편 적용 2022. 12. 13.(화)
주요 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빙배너 신설 및 민원 킷메뉴 상단 배치

'제62회 한국교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일시·장소 2022. 12. 2.(금) 13:30, 영산대학교(부산 해운대 캠퍼스)
주 제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국제 선진화 방안
주 최 한국교정학회·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발 표
• 와세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하시 사토루
• 세인트피터스대학교 형사사법학 교수 박형아
•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김병배


서울동부구치소 외부통근작업 '따손 Cafe' 개점식



'따손 Cafe' 운영 개요

수용자 사회복귀 종합지원 협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 직업훈련(교정기관에서 제빵 또는 바리스타 자격 취득)
- 교도작업(자격증 보유자 선발 후 카페 현장실습)
- 카페운영(출소 후 카페 매니저로 취업)
- 사회정착(관련업종 취업 또는 카페 창업)
- 사회공헌(멘토 및 취업연계 협력자 역할)



일시·장소 2022. 12. 20.(화) 16:00, 서울동부구치소
참 석 자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제로캠프 이사장 등
주요 내용 '따손 Cafe' 개점식 참여 및 음료 시음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이동규

대체복무교육센터 개관식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7일 강원도 영월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헌 서울 지방교정청장, 최명서 영월군수 등이 참석해 직원 및 교육생 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작품 전시회 개최

서울구치소는 1월 31일까지 민원실 내 희망갤러리에 유명작 가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희망갤러리는 김나 연 작가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접견 등을 위해 방문한 민 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안양교도소 | 교도 이승연

교정본부장 방문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용해 본부장은 중앙통제실, 수용관 리팀 사무실, 독거수용동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해 직원 간담 회 시간을 갖고 개선 야근근무체계에 관한 질문 및 건의사항 을 청취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작품 전시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약 7개월 간 민원실 내 소망갤러리에서 '2인 2색' 전시회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소통하는 교정기관 이미지 홍보 및 민원실 환경 개선 을 목적으로 광용자-유명작가의 작품 20점을 전시한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송년 콘서트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 대응 및 수용관리 등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 한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김영식 소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직원들이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힐링의 기회가 됐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종국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인천구치소는 지난해 12월 9일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 식 향상 및 폭력예방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오세홍 소장은 "기관 내 성폭력 예 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지조치를 내실화해 안전 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교정본부장 방문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용해 본부장은 보안과 사무실, 수용동, 분류센터 등 기관 내 시설을 둘러보며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현장근무자들의 고충 및 의견을 청취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공명환

교정본부장 방문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화성직업훈련교도 소를 방문했다. 신용해 본부장은 민원실, 교정장비실, 수용동 등을 둘러보고 기관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더불어 보안 현장 근무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근무 중 직원들이 다치 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둘레길 소행로 완공

의정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 해 둘레길을 조성했다. 둘레길 명칭은 소통하고 행복을 나누 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소행로로,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 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수용자 물품 기증

여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7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 지소로부터 수용자 생활용품인 화장지 약 2800개를 기증받 았다. 류동수 소장은 "몸도 마음도 추운 수용자가 겨울을 이 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의 손길을 건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이동휘

모범 직원 상장 수여식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모범 직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강군오 소장은 보안과 차병근 교위에게 서울지방교정청 모범 교도관 표창장을, 총무과 김재현 교사 등 5명에게 모범직원 소장 표창장을 각각 전수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헌혈 행사 실시

춘천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생명나눔-사랑의 헌혈 행사 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신규 교정공무원 가족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돕기 지정헌혈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황진석 소장은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교정행정 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수용자 취업지원협의회 개최

원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취업지원협의회를 열고 취· 창업 지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등 5개 유관기관과 구인회망 기업체 11곳이 참여해 출소 예정 수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출소 후 채용을 위한 업체 면접과 1대 1 맞춤형 취업상담을 실시했다.

강릉교도소 | 교사 고경오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 여성수용동 교육실에서 여 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미용봉사는 봉사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 아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 다. 박대철 소장은 "염색 및 커트 등의 봉사를 받은 여성수용 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월교도소 | 교위 서찬우

서울지방교정청장 방문

정병헌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영월교도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병헌 청장은 자치수용동 등 현장을 점검하고 기관 내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근무자들 의 고충 및 의견을 청취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헌혈 행사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 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취사장 환경 개선 공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취사장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사로 취사장 조리실 후드, 덕트, 팬을 교체하고 천장 마감재를 불연성 소재로 교체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작업 안정성을 높였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무료 중식 봉사회 방문

소망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강동 무료 중식 봉사회와 함께 수용자 자장면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호찬

대구지방교정청장 방문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지난해 12월 7~8일 양일간 교정행정 주요 시책 추진상황 확인 등을 위해 경북북부 4개소 교정기관 현장을 방문했다. 우희경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기관 대청소 실시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대청소를 실시했다. 김남주 소장은 “기관 이전 후 온전한 시설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음악회 개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7일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교정위원들은 음악회를 앞두고 민원실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한 후 점등식을 개최했으며 접견 등을 위해 이곳을 찾은 수용자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커피와 쿠키 등 다과를 제공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강중구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TMJ주식회사로부터 빵 1000개, 사과 500개, 컵라면 500개의 기부품을 전달 받았다. 장종선 소장은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4일 3.15 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도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및 생수 등을 기증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힘쓴 이들에게 표창장, 공로패,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사 이재운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4~16일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홍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학천초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원

재 소장은 “우리 포항교도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돼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폭력예방 교육 실시

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디딤장애인 성인권상담센터 백연연 소장을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철민 소장은 “관리자로서 하여금 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 형성과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지난해 12월 5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를 활용한 것으로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지진발생 대피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청송군 청송읍에서 발생된 규모 5.0의 지진에 따른 수용자 대피훈련으로 실제 지진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 숙달 및 대피하는 능력을 기르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지진 발생 시 상황별 신속 대응 및 대처 방법 등을 점검하고 교육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도주사고 대비 합동훈련

안동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구치감에서 출정 중 도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도주자 추격, 유관기관 상황 전파, 검찰 정문 폐쇄, 관할 경찰관 도착 등 각 상황별로 신속하게 훈련을 진행해 도주사고의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대구지방교정청장 방문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희경 청장은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직원폭력사범 집금 시설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발표회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소년수용자 가족 및 교정위원을 초청해 감사나눔 발표회를 실시했다. 소년수용자들은 밴드, 난타, 뮤지컬 공연 및 감사편지 낭독회 무대를 진행했다. 허덕환 소장은 “이번 행사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최도원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3일 ㈜하나레이제테크로부터 라면 900개를 기증받았다. 송진수 소장은 “이 물품은 수용자들이 추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수용자 복지에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온산소방서 시설 참관

울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온산소방서장 등 3명과 재난예방 협조체계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및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경주교도소 | 교위 이상길

수용동 공사 실시

경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전 수용동의 외단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의 마무리로 혹서기에는 더운 열기를, 혹한기에는 냉기를 차단하여 수용동의 환경개선을 실시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직원상조회 임시의회의 개최

통영구치소는 지난해 12월 7일 직원상조회 임시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상조금액·감액·지급제외 관련 회칙을 개정하고 적립금액 부족으로 인한 부담금액 일시 증액 등을 심의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4일 관내 자매결연 학교인 부북초등학교를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가 좋은 학생 5명에게 장학금(각 20만 원)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정원수 소장은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출소자의 취업 성공 지원과 직업심리검사 및 개별상담 진행 등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합동결혼식

유태오 대전지방교정청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합동결혼식에 참여했다. 이날 유태오 청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격려하고 대상자 7쌍의 합동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직원휴게실, 정보화실 오픈식

대전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1일 보안청사 내 직원휴게실과 정보화실을 리모델링했다. 기존의 낡고 오래된 직원 편의시설의 내관은 물론 외관까지 전면 보수하며 깔끔한 인테리어 공간 등을 겸비한 시설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리모델링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청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7일 경덕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자칫 의도치 않은 범죄에 휘말리거나 호기심에 의해 저지를 수 있는 사례를 교육해 조기에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및 준법정신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광태엽

교정위원 멘토링 행사

천안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일 여성수용자 8명을 대상으로 제2회 멘토링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9명이 참석했다. 교정협의회의 회장은 “이번 행사로 수용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조은희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했다. 정신건강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고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직장동료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위험징후 발견 시 조력자로서의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성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5일 공주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훈련으로, 종료 후 소방관의 강평을 통해 직원 인원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직장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자체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공무원 4대 주요비위근절(감질, 음주 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및 복무규정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함으로써 공직기강확립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이 됐다.

홍성교도소 | 교도 김희빈

폭력예방 교육 실시

홍성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소장 및 각과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위직 대상으로 별도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교정위원 및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해 봉사한 김수겸 교정위원 등 3명에 대한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올해 1월 6일까지 중앙정원의 소나무를 활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혔다. 당진 유곡교회에서 물품 지원을 받아 꾸민 중앙정원 트리는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도주사고 대비 합동훈련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해 12월 9일 유관기관과 합동해 출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주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등 상황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교정 장비 활용 능력을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균

문화행사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14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문화행사로 영화 '아바타: 물의 길' 관람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소통을 통해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교도소 | 교위 이현진

수용자 가족 물품 기증

광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8일 감장봉사를 진행하고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 30명에게 김치를 전달했다. 교정공무원,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은 김치를 담가 가족 당 10kg 총 30박스를 택배로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봉사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7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애(愛)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연탄 2000장을 마련해 인근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증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1일 수용자 정신과 원격화상 진료를 위해 광주청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청심병원은 매주 화요일 순천교도소 수용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원격화상 진료를 진행하게 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장학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지난달 12월 23일 무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총 150만 원의 사랑나눔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목포교도소 전 직원이 모은 기금으로 운용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성실한 학생을 선발해 매년 2회 전달하고 있다.

군산교도소 | 교위 우영미

장애인 수용자 자격증 취득

군산교도소는 지난해 재활직업훈련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군산교도소 장애인 수용자 42명이 보석가공 기능사를 비롯한 귀금속공예, 한식조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개관한 군산교도소 재활직업훈련관은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장애인 수용자 직업훈련기관이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보라미 체육공원 준공

제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보라미 체육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보라미 체육공원은 제주교도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유휴 부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풋살, 족구, 농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공원을 조성해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감사패 수여식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2일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교정위원 및 유공 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병주 소장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수용자 물품 기증

해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오리고기(슬라이스) 100kg을 기부 받았다. 교정협의회는 매일 교화지원금 및 수용자 자녀 장학금을 비롯해 장애인의 날 선물 기부, 흑서기 생수 1만5000병 기부 등 기부·교화행사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표창장 수여

정읍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제35보병사단 105여단 3대 대장으로부터 통합방위작전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을지연습 당시 실전적인 테러 대응 훈련과 합동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교정시설 방호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방준영

방준영 교위는 1999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23년 9개월간 성실한 근무자세로 수용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에 기여했다. 특히 분류심사 및 수용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신입수용자를 상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류심사 업무를 진행해 교정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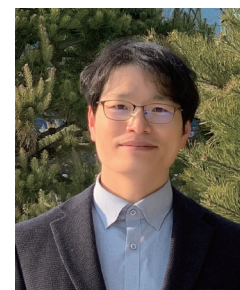
부산구치소 교사 김희석

김희석 교사는 출정과 근무자로서 평소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며 약 10년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매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검사조사 근무 시 원칙에 입각한 근무자세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교정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했다.



천안교도소 교감 김길호

김길호 교감은 징벌수용동에 근무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용자들에게 대해 적극적인 상담으로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미결수용동에 근무하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의 특성상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소송 진행관련 사항을 수시로 안내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섰다.



광주지방교정청 교위 김인균

김인균 교위는 총무과 서무업무 담당자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행복한 직장 만들기' 업무를 통해 소통과 배려로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독자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코끼리
-  사자
-  악어
-  거북이
-  돼지
-  토끼
-  곰인형
-  닭
-  기린
-  얼룩말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지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QR코드를 스캔하면
보라미몰이 내 손안에!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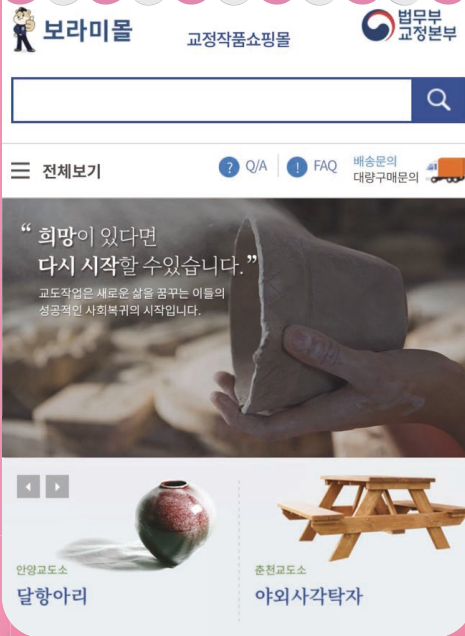
도자기, 대형가구, 생활용품, 공예품 등 수용자들이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을 담아 손수 만든
120여 종의 제품이 한 곳에.



수용자가 희망을 담아 만든 교정작품 쇼핑몰

보라미몰

corrections-mall.net



보라미몰에는 특별함이 있다!

하나, 저렴한 가격
이윤 추구보다 수용자의 근로 정신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저렴합니다.

둘, 우수한 품질
검증된 원재료를 사용하며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셋, 사회적 가치 실현
수용자의 근로 의식 함양과 기술 습득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정착에 기여합니다.

보라미몰은
전국 수용자들이 생산하는 교도작업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직업훈련 및 사회정착금 등으로 사용해
수용자의 안정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기여합니다.

OK



교정본부